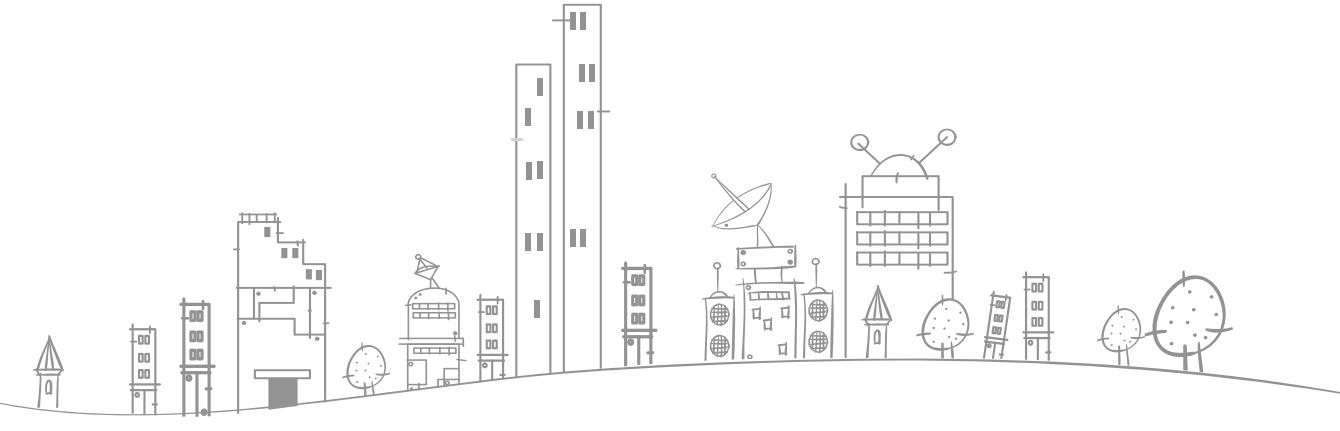


내부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들어가며...

이 매뉴얼은

1. 2002년 舊부패방지법이 제정된 후, 10여년간 시행되어 온 ‘부패신고자 보호 제도’의 중요성과 운영실태에 대한 공공기관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선진국들의 입법동향, 국내 제도 현황 및 실무적 필요 사항 등을 담아 제작한 책자입니다.
2.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I.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에서는 내부신고의 의의와 필요성, 주요 내부신고 사례, 내부신고에 대한 오해와 편견의 비판적 검토 등을 다루었습니다.
 - II. 국제사회의 흐름 및 각국의 입법동향에는 내부신고를 바라보는 국제사회의 인식과 주요 청렴국가들의 입법동향을 수록하였습니다.
 -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는 우리나라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대하여 상세하게 수록하였습니다.
 -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에는 공공기관들의 내부신고처리 방침마련의 필요성 및 전제요건과 내부방침 마련시 체크리스트 등 실무지식 등을 포함하여 기관별 내부신고 방침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수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록에는 주요 청렴선진국들의 신고자보호제도 입법사례 비교표, 신고자 보호지침 사례 및 권리위법과 그 시행령을 수록하였습니다.
3. 각 종의 사례는 신고자, 피신고자 및 관련 기관 등에서 실명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익명을 사용하였고 이해의 편의를 돋기 위하여 사례 일부를 재구성한 부분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I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	7
1.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	8
2.	주요 내부신고 사례	13
3.	내부신고에 대한 오해와 편견	17
II	국제사회의 흐름 및 각국의 입법동향	19
1.	국제사회의 흐름	20
2.	각국의 신고자 보호입법	22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31
1.	연혁	32
2.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33
3.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62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73
1.	내부신고 방침마련의 필요성	74
2.	내부신고 방침의 전제요건	77
3.	내부신고 방침 마련 시 주요쟁점	79
4.	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	87
V	부 록	99
■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I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

1.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
2. 주요 내부신고 사례
3. 내부신고에 대한 오해와 편견

I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

1. 내부신고 기능 및 정의

1) 내부신고의 의의

- 유엔반부패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UNCAC)은 부패행위나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민주주의, 정의, 지속가능한 발전,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적발·처벌하고 궁극적으로 예방할 필요성이 시급함
 - 그러나 현실에서는 부패나 공익침해행위의 수법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어 더 이상 외부기관의 감시·적발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함
- 따라서 부패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가 중요한 의의가 있으며, 특히 조직 내부자에 의한 신고(whistleblowing)는 다음과 같은 순기능이 있음
 - ① 부패 및 공익침해 통제의 용이성 및 비용절감
 -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가 은밀화·구조화·지능화됨에 따라 그 적발과 규명을 위해서는 조직의 내부문제를 잘 아는 내부자의 정보제공이 필요함
 - 조직의 내부문제에 정통한 내부의 구성원들이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으면 외부의 감사나 수사에 의해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여 이를 적발·처벌 및 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
 - 인적·물적·시간적 자원의 추가적 투입 없이 조직 내 기존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통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시킴
 - ② 수평적·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 통제
 - 기존 행정조직에 대한 통제는 법규 등과 같은 제도적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자발적·수직적·강제적 차원에서의 법규나 명령의 준수를 강요하는 타율적 통제가 주류를 이룸
 - 타율적 통제는 조직 구성원의 사기저하, 무사안일, 수동적 대응자세를 유발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더욱 은폐하려는 성향을 강화시킴

② 수평적·자율적 참여를 통한 효율적 통제

- 기존 행정조직에 대한 통제는 법규 등과 같은 제도적 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자발적·수직적·강제적 차원에서의 법규나 명령의 준수를 강요하는 타율적 통제가 주류를 이룸
- 타율적 통제는 조직 구성원의 사기저하, 무사안일, 수동적 대응자세를 유발하고 자신들의 문제를 더욱 은폐하려는 성향을 강화시킴

- 신고제도는 이러한 부작용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구성원의 자율적 신고의식에 기초한 저비용·고효율의 부패방지 정책임

③ 국민의 접근이 곤란하거나 공개되지 않았던 기준 공공기관 내부의 정보 및 문제점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로 신장시키는 효과가 있음

 - 내부신고는 특정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부패행위 시정 가능성을 증가시키므로 사회 전체의 공익 증진의 계기가 됨
 - 이를 바탕으로 궁극적으로는 조직 내 정책 결정·집행 전반의 민주성과 공개성을 향상시켜 사회 전반의 가치관과 문화를 투명하게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음

2) 내부신고자 보호의 필요성

- 내부신고는 공중보건과 안전·재정의 건전성·인권·환경 및 법의 지배원칙을 위협하는 부패·관리부실·사기행위 및 여타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행위임
 - 비리신고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적자금의 낭비를 방지하는 한편, 비리가 대형 스캔들과 참사로 악화되는 것을 방지함 (국제투명성기구 아태지역 사무국장 Dr. Srirak Plipat)
 - 신고자는 해고·정직·블랙리스트 등재·구속·협박 및 극단적 경우에는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당할 수 있는 개인적 위험을 감수해야 함
 -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은 부패를 효과적으로 적발함은 물론 정부와 기업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임
 -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의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자연스러운 연장으로 시민은 동료와 사회의 안녕을 보호 할 수 있는 내재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종종 부정행위 신고가 의무로 규정되기도 함
 - 효과적 신고자 보호제도가 없는 경우, 신고자는 부폐행위의 신고를 기대하는 주변 사람의 기대감과 신고에 따른 보복의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됨
 - 내부신고자 보호의 필요성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① 내부신고는 신고문화 정착의 전제요건으로 기능함
 - 국가를 불문하고 여전히 신고자는 밀고자, 배반자로 인식되는 경향으로 인해, 신고자가 신고 후 스스로의 힘만으로 조직 생활을 지속하기에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음
 - 내부인의 자발적 신고가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인정되는 사회풍토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제도의 효과적 운영이 필수적임

I.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

- ② 내부신고는 내부비리의 외부 노출을 통해 잠재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함
 - 신고행위에 따른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거나 구비되지 않으면,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를 감시하고 알리는 신고자들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신고자 보호제도는 신고자로 하여금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를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할 뿐만 아니라, 내부비리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잠재적 비리자(potential wrongdoers)로 하여금 사전에 부정 행위를 단념시키게 함
- ③ 내부신고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건전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됨
 - 각종 부패나 위법행위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불합리한 상황에 맞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외부에 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의미 있는 도전을 하더라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함
 -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에 따라 조직의 투명성 · 청렴성을 제고하고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함

참 고

내부공익신고 보호제도의 의의(OECD, Whistleblower Protection, 2012. 4)

- ➔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장려 내지 보호되지 않은 환경에서 부정부패의 위험성은 높아짐.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직원들은 업무관행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접하면서, 비리에 대해 대부분 먼저 알게 됨. 그러나 비리를 신고한 사람들은 그들의 동료나 상사에 의해 협박, 괴롭힘, 해고 또는 폭력 등 보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많은 국가에서, 내부신고는 배반 또는 염탐이라 여겨지기도 함.
- ➔ 그러므로 내부신고자 보호제도는 사기, 부정, 부패의 신고를 독려하는 데 효과적 수단임. 개방적 조직 문화에서 근로자들은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 알게 될 뿐 아니라 신고 과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됨. 또한 이를 통해 기업들로 하여금 거래 관계에서 뇌물 수수를 예방할 수 있음. 그러므로 공·사분야 모두에서 선의의 내부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부패방지에 기여하고, 공공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업무환경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 요소임.

3) 내부신고에 대한 다양한 정의

- 내부신고(whistleblowing)는 일반적으로 조직의 구성원인 내부자가 조직 내부에서 자행되는 부정부패 · 비리 · 불법행위 · 예산낭비 및 공공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험 등을 발견하고 이를 알리는 행위를 의미하나, 무엇이 내부신고를 의미하는지 일반화된 법적 정의는 없으며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정의가 있음
 - 영리나 비영리, 민간이나 공공조직의 임직원이 소속기관이 인권침해 등 해악을 초래하거나 당초 기관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그러한 활동을 수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Bowei & Duska)
 - 내부신고는 조직이나 그 구성원의 의심스러운 실무를 공시하는 것으로, 불법행위를 관련조직 구성원에게 알리는 내부적 공익신고와 외부기관에 알리는 외부적 공익신고로 구분(Chiasson)
 - 조직 내 스며있는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관행에 대하여 조직외부의 당국이나 일반 대중에게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행위(Courtemanche)
 - 국제노동기구(ILO)는 내부신고를 “고용주에 의한 불법적·변칙적, 위험하거나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피용자 또는 과거 피용자에 의한 신고”라고 정의(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Thesaurus, 2005)

참 고

‘내부신고’ 용어의 함축적 의미*)

- ➔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조직 내부자에 의한 신고를 ‘내부고발’이라고 하였으나, ‘고발’이라는 용어가 부정적 의미를 함축한다는 인식이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내부신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 내부신고를 의미하는 Whistleblowing은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의 위법 행위와 동료의 비리를 경계하던 것에서 유래함.
- ➔ 영미권에서 내부신고를 ‘Whistleblowing’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전제주의 국가에서 익명신고를 연상시킨다는 부정적 인식이 강해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speaking up’ 또는 ’raising concern’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있음.

*) BSI, Whistleblowing Arrangements Code of practice, 2008

4) 내부신고자 보호의 당위성 및 정당성¹⁾

- 신고자보호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통해 부패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부패 및 공익침해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 Ewing(1977)은 내부신고자는 조직의 배신자가 아니며 아래의 사유로 보호받아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주장함
 - ① 내부신고는 개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이고,
 - ②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타적 노력이며,
 - ③ 민주사회에서 일반국민은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실체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고,
 - ④ 내부자는 개인이기 이전에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익보호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 ⑤ 조직의 존립은 공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전제로 허가된 것이므로, 이러한 전제에 벗어난 활동은 금지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민주社会의 일반적 기대이고, 내부자들의 복종과 충성도 이러한 기대의 틀 내에서만 요구될 수 있음
- 한편, 내부신고가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함(전수일, 1999)
 - ① 개인의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 고발행위를 해서는 안 됨
 - 간혹 자신의 비리를 감추거나 대가를 얻기 위하여 조직의 비리를 가지고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엄밀한 의미의 내부신고가 될 수 없음
 - ② 공익신고는 항상 공공의 이익과 결부되어야 함
 - 부정과 비리의 관행을 모른 체 방치한다면 해당 조직은 물론 궁극적으로 국민 대다수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그것은 내부신고의 대상이 됨
 - ③ 내부신고는 충분한 증거와 입증자료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함
 - 단지 소문만을 믿고 고발한다던지, 특정인에 대한 개인적 감정으로 근거도 없이

1) 내부고발의 논리(박홍식 저, 1999년) 재인용

모략하는 행위 등은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음

- ④ 조직 내부에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함
 - 충분한 노력이라는 의미에 일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한 조직 내에서 만족할만한 시정조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⑤ 내부신고자는 윤리성과 공익성에 입각해서 부정과 부패를 교정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함
 - 개인이 어떠한 목적이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조직에 대한 불만이나 반감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발행위를 해서는 안 됨

2. 주요 내부신고 사례

1)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Watergate scandal)

- 1972년 리처드 닉슨(Richard Milhous Nixon) 미국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공작반인 워싱턴 워터게이트 빌딩에 있는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본부(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rters)에 도청장치를 설치하였다 발각돼 2년 뒤 닉슨대통령이 사임함 (미국 역사상 최초의 대통령 사임)
- 워터게이트 사건은 마크 펠트(William Mark Felt)²⁾ 당시 FBI 부국장이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의 밥 우드워드(Bob Woodward)와 칼 벤스태인(Carl Bernstein) 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보함으로써 공론화함

2) 미국 시사주간지 「Time」지 선정 ‘올해의 인물(2002)’

-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2002년 올해의 인물로 연방수사국(FBI)과 엔론(Enron Corporation) · 월드컴(World Com)의 비리를 폭로한 여성 내부공익신고자 3명을 선정함
 - FBI 요원 콜린 롤리(Coleen Rowley)는 FBI 요원들이 9.11 테러에 앞서 용의자를 체포한 뒤 본부에 수사 확대를 요청했으나 본부가 이를 무시했다는 내용의 메모를

2) 정보제공자인 마크 펠트 당시 FBI 부국장은 30여 년간 ‘익명의 제보자’(deep throat)로 신원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2005년 5월 자신이 제보자임을 밝힘

I.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

폭로함

- 월드컴 내부감사역 신시아 쿠퍼(Cynthia Cooper)는 내부감사 결과 드러난 38억 달러 상당의 회계부정 비리를 회사 이사회에 경고했는데, 월드컴은 쿠퍼의 고발 후 한 달 만에 미국 기업 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보호 신청을 제출함
- 엔론 부사장 셰런 왓킨스(Sharron Watkins)는 7억 달러의 결손을 발견하고 당시 회장에게 부적절한 회계처리가 회사의 파산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 엔론의 난맥상을 처음 지적했는데 이후 엔론은 파산함

3) 미국 미시간주(Michigan)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계기가 된 케미컬사 사건

- 미국 미시간 케미컬사(Michigan Chemical Corp)는 주(州)사료용곡물협동조합에 가축사료 배합용 원료를 납품해오던 중, 발암성 물질로 알려진 독성이 강한 오염물질인 폴리브롬화 비페닐(polybrominated biphenyl)을 통상의 사료용 영양 첨가물로 잘못 알고 1000파운드 이상이나 납품함
 - 그 결과 농장들은 수천 마리의 가축을 잃어 피해액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였고, 이 물질에 오염된 가축의 고기나 계란 등을 먹은 미시간주 주민들은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주 정부도 이 회사의 실수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치유하는데 수백만 달러를 지출함
- 주 의회는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를 착수하여 이 회사 직원들을 통해 독성물질 납품사건이 발생하였음을 알아냈고, 나아가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이 문제를 밖에 절대 발설하지 말 것을 명령한 사실도 확인함
 - 직원들은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해고되고 싶지 않으면 입 다물고 잠자코 있으라는 관리층의 협박으로 인하여 누구도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지 못함
 - 결국 미시간주의 우유와 계란들은 폴리브롬화 비페닐로 오염되었고, 이는 다시 먹이 사슬을 따라 사람 몸속으로 들어가 사건 발생 5년 후인 1978년 거주민들 중 97%는 몸속에 이 화학물질이 잔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 가장 문제가 된 점은 회사가 조사 과정에서 의원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 준 직원을 해고했다는 것임
 - 이 사건을 계기로 주 의회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회사의 직원들이라도 불법적 이거나 범죄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신고하거나 외부에 공개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보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함

- 1981년 미국에서는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일반적 보호를 규정한 최초의 법인 미시건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Michigan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을 제정함

4) 내부신고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 사례

- 정부의 개인정보 수집 통화 감찰 폭로 – 에드워드 스노든
 - 중앙정보국(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미 정보기관들이 정보감시프로그램인 ‘프리즘’을 사용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통화기록을 감찰하고 있다는 내용을 영국 일간지(가디언)에 폭로함
 - 현재 절도 및 간첩 혐의로 기소되었고,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 머물며 망명을 시도 중임
- 이라크 재건사업 예산 낭비 폭로 – 피터 벤 뷔伦
 - 피터 벤 뷔伦은 미 국무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 이라크 재건사업 과정에서의 예산낭비 및 사기 사례를 외부에 폭로했다가 해고됨
 - 미 정부 blacklist에 등재되어 현재 동네 잡화점에서 시급(時給) 근무 중임
- 미군의 이라크 전 당시 대민 학살 등 폭로 – 브래들리 매닝
 - 브래들리 매닝 일병은 2009~2010년 이라크 전 당시 정보분석병사로 근무 중, 미군의 민간 학살 장면이 담긴 부수적 살인(Collateral murder)이란 제목의 동영상 등을 위키리크스에 제공하여 공개하는 등 총7만 건 이상의 기밀 자료를 폭로함
 - 기밀문서 무단반출 혐의 등으로 35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현재 성전환 의사를 밝히면서 미국 사회 내 논란이 가중됨
-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 사생활 침해 폭로 – 토마스 드레이크
 - 토마스 드레이크는 NSA 직원으로 근무 중, 9·11 테러 후 NSA의 국내 감시 프로그램(불법 감청)의 문제를 상부에 제기했으나 묵살되었다면서 이를 언론에 폭로했다가 해고됨
 - 간첩 혐의는 벗었으나 복직되지 않아 연금도 받지 못해 현재 모 휴대전화 회사의 매장에서 판매원으로 생활 중이고, 2010년 모 대학에서 강사 자리를 얻었으나 몇 달 후 정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계약이 해지됨
- 국방부의 파키스탄 핵 능력 정보 왜곡 폭로 – 리처드 발로
 - 리처드 발로는 핵무기 정보 담당으로 근무 중, 조지 H W 부시행정부 때 국방부가

I.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

파키스탄에 F-16 전투기를 판매하려던 계획을 막기 위해 의회에 파키스탄의 핵 능력 정보를 왜곡 보고했다고 폭로했다가 해고됨

- CIA직원인 부인과 이혼 후,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치료를 받기도 했고, 현재 파산 상태로 알려짐

- 이란 정보 유출 – 로렌스 프랭클린

- 로렌스 프랭클린은 국방부 직원으로 근무 중, 2005년 이란 관련 극비 정보를 친이스라엘 로비스트 2명에게 제공함
- 간첩 혐의 기소로 12년 형을 언도받은 후, 현재 10개월 수감으로 감형됨

- 기밀정보의 서적 수록을 통한 공개 – 제프리 스텔링

- 전 CIA직원 제프리 스텔링은 2011년 이란에 관한 극비 정보를 제임스 리센 뉴욕 타임스 기자에게 넘겨 리센의 책 “전쟁 국가(State of War)”에 수록되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됨
- 리센 기자는 미 정부의 정보원 공개 요구를 거부했고 현재 재판 계류 중임

- 북한 정보 언론 공개 – 스티븐 김

- 국무부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던 스티븐 김은 미국의 새로운 경제제재에 대한 북한의 예상반응과 관련한 자료를 폭스뉴스에 공개함
- 현재 ‘국방정보유출 및 혀위진술 혐의’로 기소 중임

- 웨타콘 페이퍼 사건 – 대니얼 엘즈버그와 앤서니 루소

- 대니얼 엘즈버그와 앤서니 루소는 1971년 ‘미국의 베트남 개입에 관한 보고서 (웨타콘 페이퍼)’를 뉴욕타임스에 공개하여 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됨

- FBI 정보 공개 – 샤마이 레이보위츠

- 샤마이 레이보위츠는 FBI에서 히브리어 감청 내용의 번역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명 블로그에 게시했다가, 2009년 죄를 인정해 20개월 형을 선고받음

- 수사기록 유출 – 존 키리아쿠

- 전 CIA직원 존 키리아쿠는 2012년 물고문 등 ‘강화된 심문기법’으로 수감자를 고문한 CIA 비밀요원의 신상 정보 등 극비 사항을 언론에 제공함
- 이로 인해 기소되었고 죄를 인정 후, 3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음

- 소비에트 전함 사진 공개 – 새뮤얼 모리슨

- 새뮤얼 모리슨은 해군 정보분석가로 근무 중, 1984년 소비에트 전함의 사진을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라는 국방잡지에 공개함
- 불법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2년형 선고(클린턴 정부에서 무죄방면)된 경우로 정보유출자가 간첩범으로 형을 받은 첫 사례임

3. 내부신고에 대한 오해와 편견

1) 부정적 인식의 실태

- 2008년 한국 OBS TV에서 시민 200명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 부패를 신고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전원이 ‘올바르다’고 답한 반면, 내부신고에 대해서는 55명이 ‘올바르지 않다’고 응답하여 아직도 많은 시민이 여전히 내부신고에 부정적 편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2) 내부신고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그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내부신고가 설령 공익적일지 모르나, 고자질이나 밀고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음
 - 그러나 고자질이나 밀고는 힘 있는 윗사람 또는 적에게 자신만의 살 길을 찾기 위해 동료나 직장을 파는 행위지만, 내부공익신고는 불법이나 위험을 시민들이 알도록 해주는 것으로 자신의 이익이 아닌 희생을 택하는 것임
- 내부신고는 조직이나 동료에 대한 의리를 배반하는 행위임
 - 부정한 사실을 은폐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패거리적 정이나 의리보다는 국가나 사회, 국민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의무가 우선되어야 함
 - 특히, 공직자는 궁극적으로 상사나 조직이 아니라 납세자인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므로, 상관이 부패행위를 묵인하거나 부패를 유인·제의하는 행위가 발견되면, 국민들에게 반드시 그것을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
- 내부신고는 조직에 대한 불충의 전형적 사례임
 - 공직자의 충성은 특정 조직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의 기본질서와 국가적 이념에 대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직의 이익보다는 국가와 국민 전체의 보편적 이익에 부합할 것이 요청됨

I.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

- 내부신고자의 보호는 부하직원의 거부나 항의를 보호하는 것으로, 계서적 질서의 붕괴를 초래하여 결국 조직내부의 불신을 조장하고 단결을 저해함
 - 내부 화합과 질서가 조직 내부의 불의나 불법에 대한 항의나 거부로 파괴될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 법률로써 보호받을 가치가 없음
- 내부신고는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킴
 -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나 내부의 비리를 목격하고 이를 거부한 공직자를 보호하지 못할 때, 건전한 의미의 사기는 오히려 떨어지게 됨
 - 공직사회가 내부의 불법이나 비리를 신고하는 공직자 몇 사람에 의해 사기가 떨어진다면, 그것은 이미 사기가 아님

충성심 없는 배신행위다.

불신을 조장한다.

공직자 사기를 저하한다.

조직의 기강을 해친다.

조직부적응자의
경박한 행동이다.

공직자 충성대상은 조직이 아닌 국가와 국민임

내부화합은 투명할 때 가능

공직사회가 내부 비리 신고한 공직자에
의해 사기가 떨어진다면 이미 사기가 아님

윤리적인 조직에서 세워지는 기강이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킴

많은 갈등과 고민 끝에,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의로운 행위임

II

국제사회의 흐름 및 각국의 입법동향

1. 국제사회의 흐름
2. 각국의 신고자 보호입법

II

국제사회의 흐름 및 각국의 입법동향

1. 국제사회의 흐름

- 부정부패를 다루는 모든 중요 국제기구들이 부패방지의 핵심수단으로 내부신고자 보호 법률 제정의 중요성을 인지함
 - 1998년 OECD 권고(The 1998 OECD Recommendation on Improving Ethical Conduct in the Public Service including the Principles for Managing Ethics in the Public Service)와 2003년 OECD 권고(the 2003 OECD Recommendation on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of Interest in the Public Service)에서 신고자 보호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조됨
※ 2003년 권고에서는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칙과 절차를 제공하고, 명시된 규칙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들이 보복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각국에 가이드라인을 제시
 - 국제 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 금지 관련 OECD의 2009년 권고 (The 2009 Recommendation of the OECD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에서도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규정함
 - 유엔반부패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유럽연합의 부패방지에 관한 민법 및 형법 협약(the Council of Europe Civil and Criminal Law Conventions on Corruption)³⁾, 미주 반부패협약(the Inter-America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⁴⁾, 부패 방지에 관한 아프리카 연합 협약(African Union Convention on Combating Corruption) 등에도 내부신고자 보호 조항이 포함됨

3) 유럽연합은 내부공익신고자를 보호하여 그들이 부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부패방지에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고, 특히 민영화, 공공조달 업무 분야의 부정행위 적발을 위한 내부신고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어 회원국에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의무적으로 입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4) 1997년 3월 발효된 미주 국가 간 반부패협약으로 회원국들이 헌법과 법 원리에 따라 신의성실로 부행위를 신고하는 공무원 및 시민의 신분보장 등 신고자 보호제도를 신설하고, 신고자 보호제도의 관리 및 강화 대책을 마련하여 적용하기로 함

- 2008년 유럽 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는 사법체계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공개한 문서를 배포한 공무원을 해고한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제10조에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함
 - 또한, 인권재판소는 국영기업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고용주가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광고에서 제시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환자들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고용주를 고소한 후 해고된 사안에 대해서도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내림 (Eur. Ct. of H. R., Heinisch v. Germany, application no. 28274/08, 21 July, 2011)
- 2010년, G20 반부패 실무그룹(the G20 Anti-Corruption Working Group)은 2012년 말까지 예정된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시 참고할 수 있는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입법을 위한 원칙들’(Guiding Principles for Whistleblower Protection Legislation)을 작성하여 G20 지도자들에게 보고함
- 2003년 OECD는 각국에 신고자 보호제도의 도입을 권고했는데 첫 번째 지침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불법행위나 비리로 의심되는 행위를 신고한 직원을 보복, 차별적 또는 징계적 조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명확한 법률이 있는가?’였음
 -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법률은 정부가 효율적으로 신고를 장려하도록 할 수 있고, 특정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에 각기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단편적 접근과 달리 동일한 규칙과 절차가 적용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OECD, 2011:15)
- 2012년 현재, 국가 차원의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미국(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 False Claims Act of 1986), 영국(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of 1998), 뉴질랜드(Protected Disclosures Act of 2000), 남아프리카공화국(Protected Disclosures Act of 2000), 일본(공익통보자보호법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of 2004), 캐나다(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Act of 2005), 루마니아(Whistleblower Protection Act (Law 571) of 2004), 가나(Whistleblower Act (Act 720) of 2006), 자메이카(Protected Disclosures Act, 2011), 인도(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2011), 한국(Act on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Whistleblowers of 2011), 호주(공익신고법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2013) 등 10여개 국가가 있음

II. 국제사회의 흐름 및 각국의 입법동향

- OECD의 '12. 7. 보고서(Whistleblower Protection: encouraging reporting)에 따르면 신고자보호를 위해 포괄적이고 전문적 제도와 입법을 갖춘 나라로 10개국 (호주, 캐나다, 가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루마니아, 남아공, 영국, 미국)을 선정함
- 기타 국제기구의 내부신고자 보호지침 또는 입법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는 OECD의 'G20 국가의 신고자보호 우수사례 편람(OECD, G20 Guiding Principles for Legislation and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2011)', 유럽평의회의 '신고자보호 결의(Council of Europe Parliamentary Assembly, Resolution 1729 on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2010)' 와 국제투명성기구의 '신고자보호 입법지침(TI, Recommended Draft Principles for Whistleblowing Legislation, 2009)', '반부패의 효과적 수단으로서의 내부신고(TI, Policy Position, Whistleblowing : an effective tool in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2010)', '침묵의 대안: 유럽 10개국의 내부신고자 보호제도(Alternative to Silence: Whistleblower Protection in 10 European Countries, 2009)' 등이 있음

2. 각국의 신고자 보호입법

1) 미국⁵⁾

- 미국에서 신고자의 권리(Whistleblower's Rights)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와 법률의 정당한 절차(due process of law)에 의하지 않고는 각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침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수정헌법 제14조에 그 기초를 두고 있음
 - 즉 부폐행위나 공익침해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그 위험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와 권리를 갖고 있고, 그 표현행위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불법적인 보복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 미국의 신고자 권리 보호에 관한 입법은 단일법인 일반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다양한 개별법 형태로 존재함
 -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폐행위나 국가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5) 김기선, 부폐 및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방안 연구 (국민권익위원회, 2012 pp.4~28)를 요약

- 관한 신고자 보호법제는 공공부문으로, 기타 환경, 안전, 공정경쟁 등 민간 활동과 관련된 신고자 보호법제는 민간부문으로 구분할 때,
- 공공부문의 경우 연방공직자 또는 연방공직 지원자인 신고자를 보호하는 연방공직 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 또는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이 있음
- 한편, 연방정부 재정손실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 법률로서 부정청구금지법(False Claims Act) 등이 대표적임
 - 민간부문 경우 고용연령 차별금지법(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독성물질 규제법(Toxic Substance Control Act of 1976),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of 1977), 항공 투자 및 개혁법(Aviation Investment and Reform Act),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0), 에너지기구 개편법(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2005년 개정), 육상운송 지원법(Surface Transportation Assistance Act of 1982, 2007년 개정), 소비자제품 안전강화법(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 of 2008),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등 분야별로 40개가 넘는 신고자 보호 · 보상 법률이 시행됨
- 특히 연방 정부기관의 부패, 예산낭비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을 강화한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이 2012년 12월 27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연방 공직자는 보다 강화된 보호를 제공받게 됨

참 고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의 개정 주요 내용

1) 보호 대상 신고의 범위 확대

- ➔ 신고자의 상급자(supervisor)나 위법행위에 가담한 자에게 신고한 경우도 보호
 - ※ 구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에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isclosure’는 ‘report’와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 ‘폭로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야 ‘disclosure’에 해당하므로 부파행위자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될 수 없다고 축소 해석함에 따라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

Ⅱ. 국제사회의 흐름 및 각국의 입법동향

- ➔ 해당 정보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더라도 보호
- ➔ 신고자의 신고 동기를 불문하고 보호
-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신고도 보호
- ➔ 근무 중이 아닌 때에 행한 신고도 보호
- ➔ 신고대상 행위 발생 후 신고까지의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보호
- ➔ 연방 공직자의 통상업무 수행 과정(during the normal course of duty)에서 행해진 신고도 보호
 - ※ 연방항소순회법원은 부패행위 조사 등이 일상 업무인 특정 공무원이 통상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신고(보고)한 행위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까지 보호하기 위한 취지
- ➔ 이 경우 불이익한 인사처분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in reprisal for) 가해진 경우에 보호
 - ※ 불이익한 인사처분과 신고 사이의 인관관계에 대해 연방공직개혁법에서는 ‘as a reprisal for’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인과관계의 강도를 완화하여 신고자 보호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에서 ‘because of’로 개정
 - ※ 이러한 연혁을 고려하면 현행 보호대상 신고 및 이번 개정에서 확대된 보호대상 신고와 달리 ‘연방 공직자의 통상업무 수행과정에서 행해진 신고’의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는 포함하되 보호 요건을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

2) 신고자의 신의성실 판단기준 구체화

- ➔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가 자신이 ①법, 지침 또는 규정 위반, ②중대한 관리 잘못, ③중대한 재원 낭비, ④권한 남용, ⑤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관한 정보를 신고한다는 것에 대해 “합리적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를 보호대상으로 규정
- ➔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나 신고 내용이 위 ①~⑤에 해당된다 는 신고자의 믿음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나, 신고자가 합리적 믿음을 가지고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 내용이 ①~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어도 보호 가능
- ➔ 신고자에게 알려지고 신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인 사실들을 그 신고와 이해관계 전혀 없는 제3자도 ①~⑤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경우 그 믿음은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순전히 주관적 신고자의 시각은 설령 다른 공무원과 공유했더라도 합리적 믿음으로 보기 곤란

- ➔ 또한 그 믿음은 실질적 증거(결론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합리적인 사람이 수용 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

3)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범위 확대

- ➔ 신고금지 정책 · 서약 · 합의를 시행하더라도, 해당 신고금지 규정이 관련 법령에 규정 된 공직자의 권리(예를 들면 신고권)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 금지된 인사 조치로 봄
- ➔ 신고금지 정책 · 서약 · 합의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의 법령 정 보란에 해당 금지규정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

4) 보호대상 신고자 범위 확대

- ➔ 교통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직원
- ➔ 연방기관의 연구, 분석, 기술적 정보에 관한 위법한 검열(왜곡, 수정, 은폐를 의미함)이 그 자체로 신고대상 행위이거나 신고대상 행위를 야기할 경우 이를 신고한 자도 보호 대상에 포함

5) 보복성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 강화

- ➔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되거나 확대되거나 연장된 해당 기관의 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 때문에 발생한 신고자 등의 손해를, 실적제도보호위원회(Merit System Protection Board)의 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함

6) 연방기관장의 신고자 보호제도 고지의무 강화

- ➔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에게 신고자 보호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

7) 신고자 보호 옴부즈만 신설

- ➔ 각 기관(정보 관련 기관 제외)의 감사관(Inspector General)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 금지, 신고자의 권리 및 보호수단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신고자 보호 옴부즈만을 지정 하도록 함(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2) 영국⁶⁾

- 영국의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은 1998년 제정되어 199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 발생했던 일련의 사고(Clapham Rail crash, Piper Alpha disaster, BCCI사건, Zeebrugge Ferry tragedy, Barings Bank 사건 등)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됨
 - 사고에 대한 대부분 조사에서 근로자들은 사전에 관련 위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부에 신고하는 것을 두려워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또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에게 문제를 제기함
 - 근로현장에서 공익신고가 무시됨으로써 사회적 재난으로 발전하는 이유는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이 당할 불이익을 두려워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이나 안전의 위협 또는 경제적 손실의 가능성을 무시하거나 방관했기 때문임
- 이에 영국의회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 전역을 효력 범위로 하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 사람을 보호하고 그 사람이 받은 보복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법을 제정함
- 공익신고법은 새로운 법률을 독립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 Act of 1996)에 상당수의 조문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문을 개정하는 법률로서 엄밀히 말하면 고용권리법에 대한 1998년 개정문에 붙여진 제명이 바로 공익신고법임
 - 다른 국가의 신고자 보호제도와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민간부문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신고자를 함께 보호하고 있음
 - 즉,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 부패 신고자와 민간부문의 위법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이 각각 별개로 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법이라는 하나의 일반법을 통해 통일적으로 규율함
- 또한 신고대상 중에서 특이한 점은 공익침해 행위가 이미 발생한 것은 물론 그러한 사안이나 위협이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됨
- 이 법에 의한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1999/2000년에는 157건이던 것이, 2000/2001년에는 416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05/2006년에 1천 건을 넘어 1,034건을 기록하였으며, 2006/2007년에는 1,356건으로 나타남

6) ibid. pp.82~107.

참 고

공익신고법 제정 배경이 되었던 주요 사고 개요

- ➔ Clapham Rail crash – 1988. 12. 3개의 통근열차 사이에 발생한 충돌에 의해 35명 사망, 약 500명 부상. 열차 검사관은 와이어의 연결이 느슨한 것을 알았지만 괜한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침묵했던 것으로 밝혀짐
- ➔ Piper Alpha disaster – 1988. 7. 북해의 가스 생산기지가 폭발하여 168명 사망, 61명만 생존. 근로자들은 안전문제를 제기하여 자칫 직장을 잃고 싶지 않아 침묵했던 것으로 밝혀짐
- ➔ BCCI 사건 – 세계적 은행이었던 Bank of Credit and Commerce International은 1980년대 후 불법적 자금세탁과 금융사기 등 범죄를 저지르다 1991년 영국 정부에 의해 강제로 영업이 정지되었는데 독재적 조직문화가 지배한 것으로 밝혀짐
- ➔ Zeebrugge Ferry tragedy – 1987. 3. 벨기에 Zeebrugge 항구를 출발한 영국 여객선이 전복되어 193명 사망했는데, 뱃머리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항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다섯 차례나 있었으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짐
- ➔ Barings Bank 사건 – 1995년 싱가포르 지점의 직원 1명의 투기로 8억 2,700만 파운드(13억 달러)의 손실 입고 파산했는데, 상급 관리자의 문제 제기가 적극적이고 명확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남
- ➔ Arms to Iraq Inquiry – 영국 회사 Matrix Churchill이 정부 보증 하에 사담 후세인이 통치하던 이라크에 무기를 판매한 사건으로, 근로자가 외무부에 문서로 이라크 군수품이 불법적으로 생산되고 있다고 알린 것으로 밝혀짐

3) 뉴질랜드

- 뉴질랜드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법으로는 신고 보호법(Protected Disclosures Act of 2000)이 있음
 - 2001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포함하여 적용되는 신고자보호법으로 그 목적은 기관 내부에서 일어난, 또는 기관 자체에 의한 심각한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안의 신고와 조사를 촉진하고, 본 법률에 따라 그러한 부정 행위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는 근로자를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임.

II. 국제사회의 흐름 및 각국의 입법동향

4) 남아프리카 공화국

- 1999년 4월 국가반부패회의(the National Anti-Corruption Summit)에서 부정과 비윤리적 행위를 폭로하는 내부공익신고자들을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신고자보호입법의 논의가 진행됨
 - 영국의 공익신고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을 참고한 신고 보호법(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이 2000년 8월 7일 승인되어 시행됨
 - 동법의 목적은 사적 영역 또는 공적 영역 여부에 관계없이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이유로 직무상 불이익(occupational detriment)을 당하지 않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있음
 - 보호대상 정보의 신고를 이유로 당한 직무상 불이익에 관한 구제를 규정하고, 일정 정도 책임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행위에 관한 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함

5) 캐나다

- 캐나다의 공직신고자보호법(Public Servants Disclosure Protection Act)은 2005년 제정되어 2007년 4월부터 시행됨
 - 2003년 정부의 잇따른 비리의혹으로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더 커져 감에 따라 법 제정에 이르게 됨
 - 2005년 연방 차원의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연방 및 주차원에서 몇 차례 제정 시도가 있었으나 제정에는 실패함
- 동법의 특징은 보복행위 전담 특별법원이 존재하고, 내부채널을 통한 신고가 규정되어 있으며, 시행 5년 이후 성과에 대한 의무적 평가와 매년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법에 규정됨

6) 일본

- 일본은 공익신고자 보호와 관련한 법률로 2004년 6월 제정되어 2006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익통보자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of 2004)이 있음
 - 2000년대 들어 일본에서는 식품의 위장표시사건 및 자동차의 리콜 은폐 사건 등이 발생했는데, 당시 사업장 내부의 근로자 등에 의한 신고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범죄행위 및 법령위반 행위가 드러남

- 또한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를 무효로 하는 판례도 증가함에 따라 공중보건이나 안전 등을 위해 회사의 범죄행위를 신고하는 직원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는 법률안을 마련함

7) 한국

- 한국의 경우 2001년 7월 24일 제정되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된 부패방지법에서 체계적인 신고자 보호제도가 도입됨
 - 현재는 2008년 2월 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과 2011년 3월 29일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공신법’)에서 신고자 또는 그 협조자를 파면,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신변에 대한 위협 등으로부터 보호함
 - 전자는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를, 후자는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 신고를 그 대상으로 함
 - 또한 위 두 법률은 신고에 따른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신고 등을 통해 공익에 기여한 점을 기리기 위해 신고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2008년 10월 31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 제13차 국제반부패회의(IACC,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에서 참석자들은 한국의 체계적인 신고자보호제도를 높이 평가

참 고

신고자보호입법의 제정형식⁷⁾

- ➔ 신고자 보호가 형법, 노동법이나 공무원 관계법에 규정된 경우도 있으며 반부패법, 정보공개법, 회계법, 환경보호법, 회사법, 증권법 등 개별법에서 규정된 경우도 있음
- ➔ 헌법적 수준에서 보호
 - 중국 헌법 41조는 신고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제보할 권리를 주고 보복을 금지하게 함
 -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대개 특정 사람이나 특정 행위에만 적용되어 제한된 보호만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는 한계가 발생(OECD, 2011:6 ; 17–18).

7) OECD, G20 Anti-Corruption Action Plan Action Point 7 :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2012

II. 국제사회의 흐름 및 각국의 입법동향

- ➔ 형법에 규정된 경우로는, 범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복을 예방(캐나다 형법)하거나 특정유형의 신분상 불이익을 협박죄로 규정하는 경우(멕시코 형법)도 있음
 - ※ 멕시코 형법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협박죄(crime of intimidation)가 성립한다고 규정
 - 공무원이나 그 대리인이 물리적 폭력이나 도덕적 공격(moral aggression)을 통해 타인을 위협하여 타인이 형사 고소를 제기하거나 보고하는 것
 - 공무원의 관리책임 위반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막으려는 행위
- ➔ 노동법 역시 신고자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됨
 - 독일은 '기본법'(Grundgesetz) 제4조는 양심의 자유와 정보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동 조문은 정부기관에 불만과 요청을 제기하는 청원권의 헌법적 근거가 되고 있음
 - 위 헌법의 조항은 주어진 권리로 인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는 노동법의 조문과 더불어 신고자에 대한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음
- ➔ 공무원을 규제하는 법 역시 신고자 보호의 법적 근거가 되기도 함
 - 멕시코에서는 공무원의 공적 책임에 대한 연방법 제8조에서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요구. 즉 불만 표출을 방해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불만 표출을 한 자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한편 제13조는 그러한 의무를 위반한 직권남용에 대해서 처벌을 규정
- ➔ 반부패법도 신고자 보호를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 프랑스 경우 반부패법에서는 공적·사적 영역에서의 신고한 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제재로부터 보호를 규정
 - 러시아 연방 반부패법은 러시아 연방법에 따라 다른 공무원에 의해서 저질러진 부패를 고발한 공무원을 보호
 - 한국의 경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에서 공공 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자를 보호
- ➔ 기타
 - 미국의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증권법 위반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신고자를 보호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1. 연혁
2.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3.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1. 연혁

- 우리나라에 체계적인 신고자 보호제도가 도입된 것은 2002. 1. 25. 시행된 구 「부패방지법」에서부터임
 - 당시의 법 제정이유에서 알 수 있듯이 동법은 국민에 의한 부패 신고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 · 보상이 청렴한 공직품토 조성에 핵심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내용을 15개 조문(제3장)에 걸쳐서 규정함
 - 이후 동법은 신고자 보호 · 보상에 관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2차례(2005. 7. 21., 2007. 8. 3.) 개정되었고, 2008. 2. 29. 구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⁸⁾로 통합됨에 따라 동법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통합됨
- 한편,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공공부문의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이 만들어졌고 일정 부분의 성과도 있었으나, 일반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식품위생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약사법,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선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었지만 신고자의 보호에 대한 규정은 아주 미비한 실정이었음
 - 우리나라에도 민간부문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신고, 포상 및 보호 제도가 규정되었으나, 그 실효성은 매우 낮은 실정이었는데 보호조항이 있어도 보호주체 및 방법 등이 구체화 되지 않았거나, 보호조항도 대부분이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호에만 그치거나, 보호조항이 없는 법령도 많았음
 - 신변보호조치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조치를 취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했음

8) 구 국가청렴위원회,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됨.

-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신고자 보호를 민간부문에 확장한 것이라 기존 공공부문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를 국민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까지 넓힌 것으로 체계적 신고자 보호·보상 수단을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부패방지법 제정에 따른 신고자의 법적 보호가 시작된 후 그 동안 민간부문 공익신고자보호법 도입의 필요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입법화됨
 - ※ 2004년 일본의 개인의 생명 또는 신체, 소비자 이익의 보호, 환경 보전, 공정한 경쟁의 확보 등을 위한 공익통보자보호법 제정·시행도 영향
 - KTX 철도교량 보수 부실 공사,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의 불법 유출, 가짜 참기름이나 오염 혈액의 유통 등의 공익침해행위 사례는 이미 사건발생한 후 상당한 인명피해나 경제적 피해가 진행된 후 원인이 밝혀지게 됨으로써 정부 입장에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한 후속조치만을 하게 되고, 이는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됨

2. 부패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1) 보호 · 보상 대상인 신고의 요건⁹⁾

가. 신고의 주체

- 권익위법 제55조에서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누구든지’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고자가 부패행위 발생 조직의 내부자인지 외부자인지 구별하지 않고 보호 또는 포상·보상의 대상이 되도록 규정함
 - 이는 외국의 법률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신고의 주체를 대부분 부패행위가 발생한 조직의 내부자(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과 대비됨
 - ① 실제로 내부자가 아닌 사람도 부패행위를 목격할 가능성이 많고 이들에 의한 부패신고가 접수되고 있는 점, ② 외부자인 신고자도 부패행위자나 당해 조직에 의해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있고, ③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의 경우 외부 신고자는 배제하고 내부신고자에게만 보상·포상을 할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입법 태도임
 - ※ 신고의 주체로 외부자까지 포함하는 경우 신고남용의 우려를 제기하는 견해도

9) ibid, 김기선, pp.120~129.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있지만, 권익위법은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에서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8조(신고의 방법)에서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부패행위의 증거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고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음

- 권익위법 제56조는 신고의 주체와 관련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도록 규정함

나. 신고의 내용

- 신고자가 권익위법에 따른 보호 또는 보상, 포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신고내용이 동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에 해당되어야 함
- 또한, 권익위법 제67조제3호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동법 제62조부터 제66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다만,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시 보상·포상 대상에서 제외됨
※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의 내용이 부패행위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포상의 대상에 해당

① 부패행위(보호 또는 보상 · 포상의 대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리, 제의, 유인하는 행위

- 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가목의 부패행위는 그 행위의 주체가 공직자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유형 나목 및 다목의 부패행위와 구별됨
 - 여기서 공직자(권익위법 제2조제3호)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

의 법률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외에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도 포함됨

→ 권익위법에서 정하는 '공직자'의 개념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 임용 · 교육훈련 · 복무 · 보수 ·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공직자윤리법」(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

공직유관단체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다.(「공직자 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제3조의2,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 한국은행
- 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 지방공단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 출자 · 출연 · 보조를 받는 기관 · 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 · 단체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자 · 출연을 받은 기관 · 단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출자 · 재출연한 금액이 자본금의 전액이 되는 기관 · 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임원 선임 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 동의 · 추천 · 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 · 단체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 · 임명 · 위촉하는 기관 · 단체

→ '직무와 관련하여'의 개념

'직무'란 공직자가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하는 일체의 직무를 의미 함. 이와 관련해서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음

- 직무의 범위 내지 권한은 법령뿐만 아니라 지령 · 훈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는 물론, 상사를 보조할 종속적 지위에 있는 부하공무원으로서 관례상 또는 상사의 명령에 의하여 소관 이외 사무를 일시 대리할 경우 직무에 포함(대법원 1996. 6. 14. 선고96도865 판결)
- 사항적 · 장소적 관할이 필요한 것도 아님.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일 때에는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있는 직무일 것을 요하지 않고, 과거에 담당했거나 장래에 담당 할 직무라도 관계없음(대법원 1994. 3. 22. 선고93도2962 판결)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이 결정권을 가질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님. 따라서 결정권자를 보좌하여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 포함(대법원 1985. 5. 14. 선고83도2050 판결)
- 직무행위가 작위인가 부작위인가를 불문함. 수사를 중단하거나, 국회의원이 의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세관공무원이 밀수품 반입을 묵인하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직무행위 해당(대법원 1977. 6. 7. 선고77도842 판결)
-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직무행위에는 속하지 않더라도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던 직무 포함(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란 형식적으로 당해 공직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목적 · 방법 등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는 물론, 외관상 직무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행위라 할지라도 지위 또는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도 지위 또는 권한의 남용에 해당됨.
- ‘법령을 위반하여’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각종 법령에 위반하여 행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법령이란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 시행규칙 등 제반법령을 포함
- 형법에서 규정하는 직무유기, 직권남용, 불법체포, 불법감금, 폭행 · 가혹행위, 뇌물죄 등이 그 전형적인 법령위반 행위이며, 또한 공직자의 일반적인 직무상 의무인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직무전념의무, 친절 · 공정의무, 비밀준수의무, 품위유지의무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법령위반에 해당

→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이익’이란 수령자의 정치적 · 경제적 · 법적 · 인격적 지위를 유리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며,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일체의 유형 · 무형의 이익이 포함됨. 다만, 비재산적 이익인 때에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질 것을 요함

※ 권리위법 제2조 제4호의 가목의 부패행위 예시

→ 직무유기

불법하도급 묵인, 불법건축물 및 용도변경 사실 묵인, 폐수무단방류 적발 후 묵인, 골재불법 채취 및 불법매립 등 묵인, 각종 정부계획 등의 정보 누설, 각종 범칙행위 단속 후 미통보 등

→ 직권남용

인사기록카드 조작, 직원을 시켜 계량기 등 조작, 직위를 이용하여 협박 및 금품갈취 등

▶ 뇌물수수

요식업 등 단속목인, 건축허가 · 준공검사, 세금면제, 납품관련, 토지분할 · 농지취득 등 관련 서류 조작, 공장설립 허가관련, 관급공사, 정부지원금 지원, 시설 증축 및 용도변경, 각종 수의계약 등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 공문서 허위 작성 및 공금횡령

자재구입대금, 영농자금 · 대출자금 등 각종 정부지원금, 산업재해 등 각종 보상금, 업무추진비 진행관련 등과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 및 공금횡령 등

- 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나목은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정의함

※ 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나목의 부패행위

▶ ‘공적재산 침해행위’의 주체

-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도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공공기관의 상대방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매매 · 관리하는 사인 또는 사업의 공적재산 침해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될 수 있음
- 또한 공직자와 공모 또는 담합하여 행하는 부패행위는 물론, 공직자를 기망하여 사업 등이 행하는 부패행위도 포함

▶ ‘공공기관’의 개념

-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 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나목의 부패행위 예시

- 각종 보조금 편취

복지시설 운영자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들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하고, 수용인원을 늘려 신고하거나 각종 소요경비를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공공기관에 부당하게 청구하는 행위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 납품비리

방위산업체가 국방부에 군수물자를 납품하면서 하도급업체와의 이중 거래명세서 작성 등을 통해 납품원가를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

■ 건강보험 부정청구

가짜 진료카드를 작성하는 방법 등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의료비를 부정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행위

➔ 기타

회계서류를 위조하는 등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행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주 받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를 위반하여 부실시공을 하는 건설회사의 행위,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법 · 부당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으로 지정받고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하는 행위 등

단, 사기업의 종업원이 사기업 내부의 탈세를 신고한 경우라든가, 회사자금 횡령행위를 고발하는 경우는 이 법에서는 해당되지 않음

- 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다목은 앞에서 언급한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패행위’와 ‘공적재산 침해에 해당하는 부패행위’ 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권익위법 제2조 제4호의 다목의 부패행위

-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인데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그 대가로 직무와 관련된 불법적인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하였다며 돈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패행위에 해당됨
- 예를 들어 교육공무원인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을 구박하여 그 학부모가 어쩔 수 없이 촌지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게 강요하였다며 이는 형법상의 뇌물수수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패 행위가 됨

②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 보호의 대상

- 권익위법 제7조와 제8조는 공직자에게 청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직자가 준수하기 위한 행동강령을 대통령령 · 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현법재판소 규칙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행동강령은 구체적으로 ①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 ·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②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 이권개입 · 알선 · 청탁행위의 금지 · 제한에 관한 사항, ③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④ 그 밖에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상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대통령령인 「공무원 행동강령」¹⁰⁾의 주요 내용〉

- ➔ 공정한 직무수행 관련 행동강령 규정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급자의 지시에 대한 처리기준
 - 자신, 친족의 이해관계가 걸린 직무의 회피
 - 자연 · 혈연 · 학연 · 종교 등에 따른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기준
 - 인사 청탁 또는 개입 등의 금지
- ➔ 부당이득 수수 금지 관련 행동강령 규정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사익을 위한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한 알선 · 청탁 등의 금지
 -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공용물의 사적 사용 · 수익의 금지
 - 금품 등을 받거나 주는 행위의 금지
- ➔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관련 행동강령 규정
 - 외부강의 · 회의 등의 신고
 - 직무관련자로부터의 금전 차용 등 금지
 -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다. 신고자의 성실신고 의무(권익위법 제57조)

- 권익위법 제57조는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규정함

10) 국가공무원(국회, 법원, 현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의 국가공무원은 제외)과 지방공무원(지방의회 원은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규정)에게 적용되는 행동강령으로 행정부 외 헌법기관의 행동강령과 공직유관 단체의 행동강령의 표본이 되고 있음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 따라서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부폐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적절한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하는 신고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동 규정의 해석상 신고 내용에 대한 수사, 조사 또는 재판결과, 부폐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당초의 신고가 동법에 의해 보호되는 신고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에 유의해야 함
 - 신고 내용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에 의해 부폐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로 해석할 경우 동법 제57조에 따른 신고자의 성실신고 의무 규정은 실익이 없으므로, 신고 당시 객관적으로 부폐행위의 외관을 띠고 있다면 성실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한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임
- ※ 수사권을 가진 검찰에서 어떤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여 기소했더라도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고 사법부 내에서도 심급별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수사권 등 아무런 공권력이 없는 신고자에게 신고 시 합리적 수준에서 증거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정도를 넘어 신고된 행위가 최종적으로 유죄로 확정된 경우에만 신고에 따른 보복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축소해석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권리위법 제57조에 반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부폐신고를 장려하여 부폐행위자를 적발, 처벌하려는 동법의 입법 목적에도 배치

신고자의 성실의무

- ➔ 주요국의 신고자 보호법에서는 신고자의 성실의무를 요구하고 있음
 - 미국의 연방공직신고자 보호증진법, 사베인스 – 옥슬리법에서는 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합리적 믿음(reasonable belief)을 요구
 -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에서는 신고자에 대해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를, 뉴질랜드의 신고자보호법과 캐나다의 공직신고자보호법, 영국의 공익신고법에서는 신고자에 대해 신의성실(in good faith) 원칙에 따라 신고한 경우 보호될 수 있음을 규정
- ➔ 기존 미국의 연방공직자 보호법에서는 ① 법, 지침 또는 규정 위반 ② 중대한 관리 잘못 ③ 중대한 재원 낭비 ④ 권한 남용 ⑤ 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위험에 관한 정보를 신고자 자신이 ‘합리적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신고한 경우를 보호 대상으로 함
 - 따라서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나, 신고 내용에 대한 신고자의 믿음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

- 반대로 신고자가 합리적인 믿음을 갖고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그 신고 내용이 ①에서 ⑤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보호 가능. 즉, 신고자에게 알려지고 신고자가 확인할 수 있는 핵심적 사실들을 그 신고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도 ①에서 ⑤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믿음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
 - ※ 미국의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미주리주에서 2주 후면 동일한 교육프로그램이 있음에도 2명을 멀리 벼지나아주로 교육을 보내 예산을 낭비했다고 신고한 사건에서, 긴급한 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먼 곳으로 교육을 보낸 위 조치는 부당하지 않으나, 신고자 보호 여부와 관련하여 신고자가 교육의 시간적 긴급성 여부까지 확인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자에게 알려진 사실들만으로도 합리적 사람이 신고자와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했다고 판단
- 또한 그 믿음은 실질적 증거(결론을 지지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합리적 사람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
- ➔ 영국 공익신고법의 경우 공익신고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신고해야만 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제보한 것이 아니어야 할 뿐 아니라 신고한 정보 및 그 정보에 포함된 주장이 충분히 진실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만 보호대상이 됨
 - 합리적 믿음이란 정확성이 아닌 그런 믿음이 가지게 된 것이 합리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고대상 부정행위가 일어났다고 오해했더라도 그렇게 믿은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면 보호대상 신고가 될 수 있음
 - 고용법원에서는 부주의하게 또는 적절한 정도의 주의 없이 신고했더라도 허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반면, 신고내용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확인 없이 반복적이고 근거 없이 과장된 신고에 대해서는 동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
 - 임금인상을 위한 협박 목적이나 기타 부정한 동기가 내포된 신고의 경우에도 동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봄

라. 신고처(申告處)

- 보호대상인 신고
 - 부패행위 신고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가 권익위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법 제55조),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권익위법 제67조제1호) 및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권익위법 제67조제2호)에 제출되어야 함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 일반국민의 경우, 국민권익위에 신고(권익위법 제55조)
- 공직자의 경우, 수사기관 ·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권익위법 제56조)
- 보상 · 포상 대상인 신고
 - 부패행위 신고¹¹⁾ 그 대상이 됨
 - 신고처와 보상 · 포상의 관계상, 신고가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된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 포상의 대상이 되나, ② 수사기관, 감사원 또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 기관(권익위법 제67조제1호)이나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 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 · 감독하는 공공기관(권익위법 제67조제2호)에 제출된 경우에는 보상 · 포상의 대상이 되지 않음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부패신고 처리 절차

▶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사항 등 확인

-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
- 다른 기관에 동일 내용을 신고했는지 여부
-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 과정 등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

▶ 조사기관에 이첩 또는 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

-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 조사가 필요하나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 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으면 해당 공공기관)
- 부패혐의자가 고위공직자¹²⁾인 경우 위원회 명의로 검찰에 고발
- 신고 내용이 명백히 허위 등인 경우에는 종결

▶ 조사기관의 조사(수사, 감사 포함) 및 그 결과의 위원회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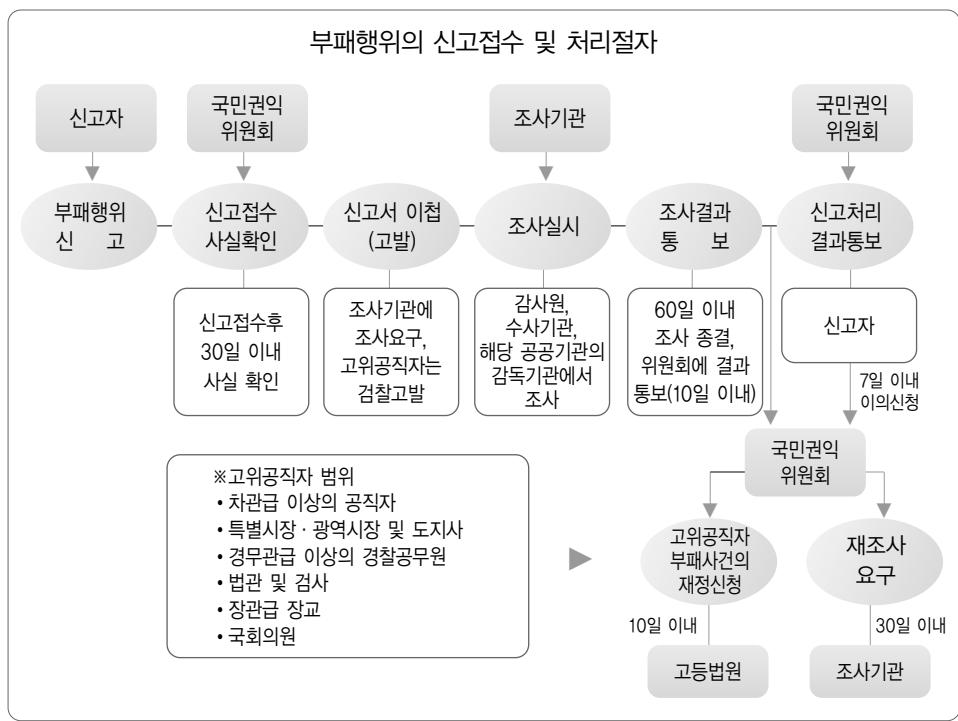
▶ 조사 결과 통보에 대한 위원회의 처리

- 통보된 조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신고자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11)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의 경우 신고된 내용이 동시에 부패행위에도 해당 되는 경우 외에는 보상, 포상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12) ①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및 도지사, ③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④ 법관 및 검사, ⑤ 장관급 장교, ⑥ 국회의원

- 통보된 조사 결과가 불충분 시 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재조사를 요구, 해당 기관은 재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이를 신고자에게 통지
- 고위공직자에 대해 불기소할 경우 위원회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



마. 신고 방법

- 부패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권익위법 제58조)
 - 이는 신고자의 성실신고 의무 규정(권익위법 제57조)과 더불어 허위 신고를 예방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음
- ※ 부패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없이 신고할 경우 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커지는 반면 그 불이익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가능성은 작아지므로, 예비 신고자가 신고 여부 결정에 신중하도록 하고 신고를 위한 사전준비도 더 철저하도록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신고자 보호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2) 부패행위 신고자 등¹³⁾에 대한 보호

가. 신분보장 또는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보호

I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 또는 시정조치의 요구

- 누구든지 ①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②신고로 인하여 인 · 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 · 허가, 계약 등의 잠정적 효력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음 (권익위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

13) 권익위법은 제65조에서 신고자는 물론, 협조자(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 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도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하고 있다.

※ 현실적으로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또는 행정적 불이익이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된 사례를 찾기는 힘들지만, “보복(괴롭힘)의 형태는 오직 인간의 상상력(의 한계)에 의해서만 제한된다”(the forms of harassment are limited only by the imagination.)라는 주장(Tom Devine 외 2인, *The Corporate Whistleblower's Survival Guide*, 2011)에서 보듯이 이러한 형태의 보복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곤란*)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의 유형

- 동법 시행령 별표 2는 ①파면, 해고 등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②직위 해제, 강등, 승진제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③전보, 전출이나 이에 준하는 불이익 조치, ④임금의 차별 지급, 집단 따돌림 또는 업무 미부여 등 근로조건상의 차별로 구체화함
- 신분상 불이익이 현실화되기 전 예상되는 시점에서도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의 사전 예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함

금지된 불이익 또는 차별의 유형*)

- ▶ 신고자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금지대상 불이익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미국의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과 한국의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금지대상 불이익을 가장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됨
- ▶ 미국의 연방공직신고자 보호증진법에서는 동법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아래 11개 유형의 인사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 또는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금지함
 - ① 임명, ② 승진, ③ 면직, 정직, 강등, 감봉, 일시적 직무 미부여, 또는 기타 징계처분이나 시정을 위한 처분, ④ 파견, 전출, 또는 전보, ⑤ 비경쟁적 재임용(reinstatement), ⑥ 원상회복, ⑦ 재임용, ⑧ 성과평가, ⑨ 급여 · 복리후생 · 포상에 관한 결정 또는 교육 · 훈련에 관한 결정(다만, 임명 · 승진 · 성과평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 · 훈련만 해당) ⑩ 정신 감정 · 검사를 명하는 결정, ⑪ 그 밖의 임무, 책임, 또는 근무조건의 중대한 변화
 - ※ 연방항소준회법원은 내부신고자가 공직에 지원하자 해당 기관에서 해당 채용공고를 취소하고 그 직위를 충원하지 않는 것은 인사처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이유로

* ibid., 김기선, pp.20.

* ibid., 김기선, pp.13~15.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임용 · 승진 · 포상 등의 인사처분을 하지 않는 일종의 소극적 인사처분(또는 부작위)도 금지된 인사처분에 해당되는 것으로 봄

- ➔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에서는 ① 해고, ② 강등 · 감봉 및 그 외 불이익 취급, ③ 파견근로자의 취소, ④ 파견노동자의 교대 또는 그 이외의 불이익 취급을 불이익으로 규정
- ➔ 영국의 공익신고법에서는 근로종사자가 신고를 이유로 부당해고 및 사용자에 의한 조치 또는 고의적 조치 불이행에 의한 피해(detriment)를 입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판례에 의해 구체적 피해의 유형을 정립함 (① 작위에 의한 피해로는 징계조치, 일감을 적게 주기, 협박, 신고자의 직위에 대한 구인광고, 영구직위에 약속 철회, 신고자의 신분누설 등, ② 부작위에 의한 피해로는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 것, 조사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알리지 않는 것 등을 인정)
- ➔ 캐나다의 공직신고자보호법은 ① 징계조치, ② 강등, ③ 퇴직 · 해고 등 고용관계의 종료, ④ 고용조건 또는 근무조건에 부정적인 조치, ⑤ ①부터 ④까지 언급된 조치를 취하겠다는 위협을 열거

●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 신고자에 대한 보복의 형태가 고용관계에서의 배제(파면, 해고 등)나 징계, 그 밖에 근무조건상 차별 등이 아닌 인 · 허가 등의 취소, 계약 해지 등인 경우를 대비한 것임
- 주로 외부 신고자가 보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나 내부신고자가 우회적으로 이런 형태의 보복을 당한 경우에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 국민권익위원회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요구 또는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를 접수하면, 요구인 ·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 진술서 제출요구, 요구인 ·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 제출요구, 관련 사실 · 정보 조회 등의 방법으로 신고로 인한 불이익인지 여부에 대해 조사함 (권익위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
-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권익위법은 제91조제1항제2호에서 조사에 불응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

③ 국민권익위원회의 심리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또는 시정조치 요구가 타당한지 여부를 심리함
 - 이 과정에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 범위를 높이고 신고 후 겪을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에서 신고자가 부담하게 될 여러 법적 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권익위법에서 규정한
 - ① 불이익 추정, ② 신고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 면책, ③ 신고자에 대한 형(刑) 또는 징계처분의 감면 등 특별한 보호규정의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심리함
- ① 신고에 따른 불이익 추정(권익위법은 제63조)
 - 신고자가 동법에 의한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함
 - 즉, 신고자가 권익위의 보호절차나 그 밖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권리 위법에 따라 신고했다는 사실, 신고 후 신분상 불이익이나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동 불이익이 신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피신고기 관 등에 의해 입증되지 않으면 그 불이익이나 차별 등은 신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
 - 이는 통상 신고자가 불이익을 가한 기관과 비교할 때 그 불이익이 신고 때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인사 등 관련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사법상 구제절차에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신고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임

신고에 따른 불이익 추정*)

- ➔ 미국의 기존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78)에서는 “신고 때문에”(because of any disclosure) 인사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는 것 또는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것을 금지함
 - 이는 인사처분과 신고 사이에 일정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호대상 신고가 해당 인사처분의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인 경우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함
 - 신고자는 신고행위가 자신에게 가해진 일정한 불이익의 기여요인이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 ibid., 김기선, pp.14~28.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되고, 신고가 없었더라도 그와 동일한 인사조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에 의한 입증책임은 신고자의 소속 기관 부담임

-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여부와 관련, ① 해당 인사처분에 대한 합법적 이유, ② 해당 인사처분 결정에 관계된 직원들의 보복 동기의 존재 및 강도, ③ 신고자가 아닌 직원의 유사 사례에 대한 인사처분을 고려함

▶ 미국의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09)의 경우, 신고자에 대한 인사처분과 신고 사이의 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연방공직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상의 “증거우위의 원칙”(preponderance of the evidence)에서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로 완화됨

- 즉, 신고가 해당 인사처분에 대한 “기여요인”(contributing factor)임이 인정된 사안에서 그 신고가 없었더라도 동일한 인사조치가 행해졌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해당 기관이 제시하지 못하면 그 인사처분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간주함
- 영국 공익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of 1998)은 노동자의 해고에 이르지 않은 불이익 중 고용법원에 제소된 사안에 대하여 사용자가 피해를 유발한 작위 · 부작위의 이유를 제시하도록 함
- 부당해고와 관련,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합법적이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반면, 1년 미만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음

② 신고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 면책(권익위법 제66조제3항)

- 권익위법에 의한 신고의 경우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봄
 - 이는 부패행위에 관한 정보는 사회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밀에 해당될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비밀준수 의무를 포함하여 부패행위 신고를 사실상 억제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취지임
 - 따라서, 권익위의 보호절차는 물론 신고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모든 법적 절차에서 동 규정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사유가 동 비밀준수의무 위반인 경우 그 불이익조치는 신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

③ 신고자에 대한 형 또는 징계처분의 감면 등(권익위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

- 권익위법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동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刑)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고자의 책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함

- 동 규정은 현실적으로 신고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조직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해 개인이 불가피하게 연루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한 규정으로 볼 수 있음
- 신고와 관련하여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신고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사법부는 범죄가담의 자발성 정도, 뉘우침의 정도, 신고의 부패행위 적발·처벌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할 필요가 있음
- 소속기관 등에서 신고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동 책임감면 규정의 취지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함

책임감면 사례

→ 책임감면 규정 적용 요청을 통한 기소유예처분

- 신고자 甲은 ○○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검침 용역원이 매월 일정액의 금품을 받는 대가로 수도요금을 낮게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예산을 손실시킨 부패행위를 신고한 후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혐의가 드러나자 보호조치를 요구함
※ 위원회는 관할 검찰청에 부패방지법상 책임감면 규정 등을 근거로 신고자에 대하여 보호 조치를 요구하였고, 요구인은 기소유예 처분됨

→ 협조자 보호 규정 적용 요청을 통한 불기소처분

- ○○시 인·허가업무 담당공무원들의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조사에 조력한 협조자 乙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이 관련된 범죄혐의가 드러나자 형사처벌 및 소속 기관의 징계처분 등이 예상된다며 보호조치를 요구함
※ 위원회는 관할 경찰서, 검찰청 및 소속기관 등에 부패방지법상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규정 등을 근거로 협조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하였고, 요구인은 불기소 처분됨

④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 신분보장 조치요구 등의 처리

- 권익위는 신분보장조치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기관 장 등에 대한 신분보장조치 등의 요구여부를 결정함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을 연장함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 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

- 권익위는 조사결과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 기관의 장, 관계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함 (권익위법 제62조제7항 전단)
-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구에 따라야 함 (권익위법 제62조제7항 후단)
- 공직자인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요구가 전직, 전출·전입·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인 경우 권익위는 그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권익위로부터 요구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여야 함 (권익위법 제62조제8항)

● 신고자 신분보장 등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 형사처벌

-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권익위법 제90조)

▶ 과태료

-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권익위법 제91조제1항제1호)
-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 또는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신분보장조치 요구 또는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권익위법 제91조제1항제3호)

징계절차 미중지 이후 과태료 부과 사례

모 공직유관단체는 위원회가 보호조사 중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를 했음에도 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하여 신고자를 해임 처분하였고, 이에 권익위는 해당 기관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함 (징계절차 중지 시 과태료 미부과)

▶ 정계요구

-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함 (권익위법 제62조제9항)

나. 신변보호

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의 요구 및 위원회의 결정

- 신고자는 신고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권익위법 제64조제2항)
 - 신변보호조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되지 체없이 서면을 제출함 (권익위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 신고자 및 보호 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함 (권익위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② 위원회 요구에 따른 경찰관서의 신변보호조치의 실행

- 권익위로부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함 (권익위법 제6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 이 때 위원회는 동 조치 결과를 신고자에게 체없이 통지함 (권익위법 제6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신변보호조치의 유형(「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시행령 제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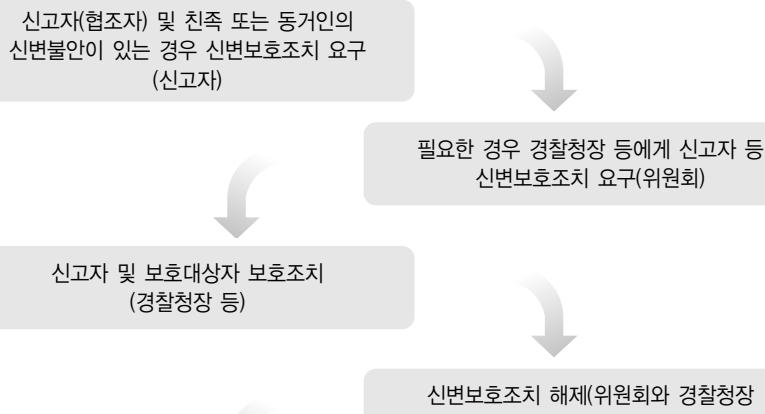
1. 일정기간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2. 일정기간의 신변보호
3.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4.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5.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⑤ 경찰관서의 신변보호조치의 해제

-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권익위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음 (권익위법 제6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 이 때 권익위는 동 조치의 해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함 (권익위법 제64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제5항)

신변보호조치 업무 흐름도



신변보호 사례

- 1) 신고자甲은 복지재단 이사장의 보조금 횡령의혹을 신고 후, 신분이 노출되면서 자신과 가족이 직원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고 미행도 당하는 등 신체적 위해 우려 및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며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함
 - ☞ 권익위는 협박과 위협 사실을 확인 후, 직접적 신변위협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관할경찰서에 보호조치를 요구함
- 2) 예산낭비 등 부패신고 후 언론에 보도되면서 신분이 노출된 신고자乙은 신변불안을 호소하며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함
 - ☞ 신고자가 민간인 신분으로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직적 위해를 당할 우려가 있고, 신고사건 조사 중이어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권익위는 관할 경찰서에 긴급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함
- 3) 공사관련 부패신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진술 협조한 조력자丙은 피신고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자신과 가족이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당했다며 권익위에 보호를 요청함
 - ☞ 신고협조자가 피신고자의 폭행으로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고, 정기진료 등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고려하여 협조자와 그 가족에 대해 관할 경찰서의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함

다.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신고자에 대한 특별 보호

- 권익위법 제64조제4항은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조서나 진술서 등을 작성할 때 신고자의 인적 사항(성명, 연령, 주소,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기재되지 않을 수 있고(「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 신고자의 신원관리카드에 대한 열람이 제한됨(「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제9조)
 - 신고자에 대한 증인신문 시 판사는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물로 촬영하고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으며,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제10조) 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정(退庭)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신고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음(「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제11조) 공판기일 지정, 심리방법(집중심리) 등을 달리 할 수 있음(「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제12조)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라.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 신분비밀보장제도의 개요

- 누가 신고했는지 밝혀지지 않으면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자체가 일어날 수 없으므로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신고자 보호의 첫 단계로서 매우 중요함
- 신분비밀 보호를 위한 제도는 ① 모든 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② 신변보호 또는 조사 · 형사절차에서 특별보호를 받는 신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구분됨

① 신고자 일반의 신분비밀 보호

- 위원회 및 신고 사건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됨(권익위법 제64조제1항)
- 만약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결과 권익위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권익위법 시행령 제69조제1항 및 제2항)

② 신변보호 또는 특별보호를 받은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 누구나 경찰관서로부터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신고자(그 친족과 동거인을 포함) 또는 조사 · 형사절차에서 특별보호를 받고 있는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됨 (권익위법 제64조제5항)
- 위원회는 동 의무를 위반한 자를 고발할 수 있고, (권익위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이 경우 위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권익위법 제88조)

신분공개에 따른 관련자 징계 사례

- 신고자 甲은 국민신문고에 모 중앙부처 소속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을 신고 후, 조사과정에서 신분 노출로 소속 기업을 퇴사함
- 권익위의 신분공개 경위 조사 결과, 신고내용이 해당부처 직원으로부터 제3자를 거쳐 피신고자와 소속기업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자 4명을 징계함

- 또한 위원회는 그 징계권자에게 위반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권익위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마. 협조자 보호

-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가 발생했음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나 소송절차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제절차 등에서 관련 사실을 함께 목격했거나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의 증언이나 협조는 필수적임
 - 따라서 위법행위에 반대하거나 위법행위 지시를 거부한 자는 물론,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조사나 소송에 협조한 자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권익위법 제65조는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도 신고자 보호규정인 동법 제62조(신분 보장 등), 제64조(신변보호 등) 및 제66조(책임의 감면 등)를 준용하도록 함
 - 따라서 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인 신분보장(고용관계의 보호),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보호, 신변보호,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의 특별 보호, 신고자의 신분비밀 보호, 신고자의 비밀준수의무 위반 면책, 신고자의 책임감면 등의 규정이 협조자에게도 적용됨
- 다만, 동법 제65조가 준용대상으로 동법 제63조의 불이익 추정 규정은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협조자에게도 불이익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으나 실무적으로는 적용하고 있음*)
- 한편, 신고 과정에서 증거수집 등에 협력한 신고 협조자, 신고 내용과 관련된 소송 등에서 협력한 소송 협조자,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 협력한 보호조치 협조자 등도 제65조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음*)
- 아울러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벌칙과 과태료 규정인 동법 제90조 및 제91조제1항도 협조자 보호를 위해 준용됨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ibid., 김기선, p.140.

* ibid., 김기선, p.140.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협조자 보호 사례

- 모 공직유관단체 감사가 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후, 인사담당 임직원 3명(이사, 인사부장, 인사팀장)은 감사의 자체조사 당시 진술 등으로 조력한 직원 2명을 고발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서울본사에서 지사로 하향전보시킴
 - 권익위 조사 결과, 전보된 2명은 신고 협조자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으로 인정되어 원상회복 되었고,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가한 임직원 3명 중 임원 1인은 과태료 5백만 원,(임원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어 감독기관에 인사자료 통보) 직원 2명은 징계처분 요구 및 과태료 2백5십만 원이 각각 부과됨

-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협조자의 범위를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 수사 · 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 · 소송 등에서 진술 · 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까지 확대하여 인정함
 - 이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려고 했던 자까지 포함함

바. 신고자에 대한 정신적 치료지원

- 부패신고자는 소속기관의 신고자 색출에 따른 불안감, 신고자로 밝혀진 후 신분상실에 대한 스트레스, 동료 · 직상상사로부터의 집단따돌림과 조직의 배신자라는 낙인에 대한 우울증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의료지원 필요성이 시급함
 - 권익위에서 실시한 2011년 부패신고자 신고 이후 심리상태 변화 면담조사결과, 90.5%(19명/21명)의 신고자가 신고 전후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함
- 권익위는 신고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는 신고자들이 무료로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의료지원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2010년)하였고 ‘부행위신고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법률구조 지원’ 을 제정 · 시행하였으며, 부패신고자의 정신과 진료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음
 - 동 제도의 도입은 신고자 보호제도의 선진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현재, 정신과 진료 경력에 대한 편견으로 2010. 4.~2012. 9.까지 의료지원을 받은 신고자는 총 4명에 불과

의료지원 사례

- 신고자 甲은 공직유관단체의 국고보조금 횡령 등 부폐행위를 위원회에 신고 후, 소속직원들의 집단따돌림 및 피신고자 측의 보복성 인사조치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의 조사 등이 계속되자, 체중이 감량되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 및 불면증 등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함
– 권익위를 통해 정신과 상담 · 진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음

사. 신고자 보호 규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종합)

위반 내용	실효성 확보 수단
① 신고자에 대한 고용관계에서의 불이익(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상 차별),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 여부에 관한 권리위의 조사에 불응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신고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가 권리위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신고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가하거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징계 요구
④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에 대한 권리위의 신분보장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경제적 · 행정적 불이익에 대한 권리위의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⑥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공개한 위원회 또는 조사기관 종사자	징계 요구
⑦ 신변보호 또는 특별보호를 받는 신고자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분비밀을 공개한 자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 요구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 주요 보호사례

■ 신분보장조치(원상회복) 및 과태료부과

- 사건개요(신분 제2012-9호)
 - ○○시 생활폐기물 반입 관련 전임자의 부패행위 신고로 오히려 징계처분(향응수수 및 품위 손상,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약 10만원)을 받아 신분보장조치 요구
- 위원회 조치결과
 - 징계사유로 적시된 내용이 비위확인 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으로, 그 징계처분은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보아 소속기관의 장에게 징계처분의 취소 요구 및 과태료 부과
 - 시장은 신고자를 원상회복 조치하고 과태료 350만원 납부
- 시사점
 - 전임자의 비위행위를 묵인하지 않고 내부고발을 한 용기있는 행동 사례
 - 신고로 부당이득 상당액 환수 결정 및 형사입건 되었음에도 신고자를 징계한 기관장에 원상 회복조치 요구 및 과태료부과
 - ※ 신고과정 등 사항을 이유로 한 징계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으로 봄

■ 신변보호

- 사건개요(신변 제2012-1호)
 - 요구인은 구매단가 부당인상 의혹과 관련한 부패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고취하를 종용당하는 과정에서 피신고자 등이 요구인을 룸살롱으로 불러내 협박한다고 주장하며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 위원회 조치결과
 - 요구내용이 타당하고, 신변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하여 보호보상과장이 당해 경찰관서에 조치 요구일로부터 요구인 이주시까지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을 요구하는 긴급신변보호조치를 취함
- 시사점
 - 피신고업체로부터 회유 · 협박, 조직폭력배의 신변위협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현재 진행 중인 위해로 판단하여 실무과장의 판단으로 선 조치한 사례

■ 신분공개여부 확인(징계요청)

- 사건개요(공개 제2012-5호)
 - 산사태 복구공사비 과다 계상 의혹 등을 신고한 현장 관리반장이었던 신고자(요구인, 일용직)가 신고한지 8시간만에 피신고기관으로부터 신고 취하를 종용받아 신고를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원회에 신분공개여부 확인을 요구
- 위원회 조치결과
 - 신고접수 담당자가 피신고기관 관계자 B에게, 관계자 B는 관계자 C에게 재차 요구인 신분을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어, 각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청
 - 각각 주의 · 경고처분
- 시사점
 - 신고자 인적사항 등의 비밀보장은 내부고발의 핵심요소로서, 신고자의 신분을 별다른 주의 없이 공개한 직원 모두에 징계를 요청
 - ※ 신고자 인적사항 등 비공개 주의 소홀에 따른 책임 발생

■ 조사중 해결

- 사건개요(신분 제2012-13호)
 - ○○구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 비위 등을 신고한 요구인은 부당한 전보조치 및 근무조건상 차별에 대해 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 위원회 조치결과
 - 신고 후 전보조치, 업무 미부여 등 차별 행위에 대한 조사 중, 소속기관이 요구인을 희망지로 재전보조치하여 요구내용이 충족되었다고 판단, 종결 처리함
- 시사점
 - 보호조치요구에 대해 조사중이었으나 신고자 소속기관에서 보호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시정한 경우로서 신속한 원상회복과 동시에 상호 간 해결 만족도가 높아 모델 사례로 활용 가능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 취업지원

● 사건개요

- 요구인은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횡령에 대해 신고한 후 해당 학교로부터 일용직 농구 코치직의 근로계약이 해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함

● 위원회 조치결과

- 위원회의 보호 조사 착수 전에 신규 코치 채용으로 사실상 원상회복이 곤란하여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요구인을 타 학교의 농구코치로 알선

● 시사점

- 사안에 따라서는 취업지원으로 원만한 해결 도모 필요
※ 향후 고용노동부 등과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의료지원

● 사건개요

- 요구인은 하수준설토 처리 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의 묵인의혹을 신고한 후 신분노출과 피신고자의 협박 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진단서 제출 및 의료지원을 신청

● 위원회 조치결과

- 요구인의 진술서, 피신고자와의 통화내역, 이사비용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한 결과 의료지원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진료비 지원(대한신경정신의학회 협조)

● 시사점

- 신체적 위해 예방 외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보호범위에 포함된 사례
※ 2010년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MOU)을 맺어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책임감면

● 사건개요

- 요구인은 ○○공단 직원의 보조공학기기 납품관련 부패신고 후 공범으로 함께 기소 의견 송치되어 위원회에 형의 감면을 요청

● 위원회 조치결과

- 요구인의 신고가 관계기관 회계규정 및 관리시스템 정비 등 제도개선에 기여하였으므로 법 제66조 제1항에 따라 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및 신고자 책임감면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시사점

-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 또는 징계의 감면이 가능한 사례, 뇌물수수 등에 대한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해 감면제도 강화 필요
※ 임의적 책임감면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개정 추진 중

■ 법률구조

● 사건개요

- 주민투표 부정 관련 신고 후 해임처분을 당하여 권익위 보호조치 외에 개인적인 소송 진행 과정에서 법률구조를 요청

● 위원회 조치결과

-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 외에도 대한변호사협회에 법률구조 요청

● 시사점

- 보호조치요구 결정 외에도 신고자의 소송 제기에 대한법무지원으로 보호조치 등 강화
※ 2008. 5. 30.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 체결

3.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 및 포상

1) 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필요성

-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신고자가 보호받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고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제도는 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유효한 수단
 - 이를 통해 또한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의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부패예방에 기여
- ※ 다만, 신고자 보상제도는 일부 국가에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의 부정청구 금지법 (False Claims Act)과 한국의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대표적 사례 임

미국의 부정청구 금지법(False Claims Act)*

- ➔ 부정청구 금지법은 정부와의 계약 등의 이행 과정에서 허위 또는 부정한 청구를 통해 정부로부터 부당이득을 얻는 일종의 사기행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제정된 법률로, 정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통해 부당이득을 받아낼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보상금 (monetary awards)으로 준다는 것을 골자로 함
- 이 법에 따르면 계약 등의 이행과정에서 허위청구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부당이득을 얻는 자는 미국 정부에 ① 5,000달러 이상 10,000달러 이하의 민사벌금(civil penalty)¹⁴⁾, ② 미국 정부가 입은 손해의 3배, ③ 소송비용을 지불하여야 함
- 이 경우 미국 정부가 직접 부정청구자를 상대로 환수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사기행위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인(私人)도 정부를 대신해서 환수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인이 환수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큐탐소송(qui tam suits)이라 함
- 한편, 정부는 사인이 제기한 환수소송에 당사자로서 참가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환수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당초 환수소송을 제기한 자에게 승소금액 또는 화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2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며, 정부가 참가하지 않고 사인이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승소금액 또는 화해금액의 2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

14)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부과하는 민사벌금을 물가 인상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신설함. 개정 전에는 고정되어 있었으나, 물가인상에 따른 연방 민사벌금 조정법(Federal Civil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Act of 1990)에 의해 조정하도록 함.

* ibid., 김기선, pp.29~38.

- 이 법의 적용을 통해서 현재까지 지급된 보상금만도 수백만에서 수천만 달러에 이르고 있는데, 대표사례로는 국립건강연구소(National Health Laboratories)가 불필요한 혈액 검사를 하고 그에 대하여 정부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있다는 비리의 고발, 제너럴 일렉트릭(General Electric)이 정부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제트엔진의 가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정부의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前 프로젝트 관리자의 고발 등이 알려짐

2) 권익위법상의 부패신고 보상금 · 포상금제도

- 권익위법은 신고로 인해 직접적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권익위에서 최대 20억 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 이와 함께 신고에 의해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3) 부패신고 보상금제도

I 신고 보상금제도의 의의

- 부패행위의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손해 일부를 보전함으로써 공익신고 활성화와 부패예방 및 척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

신고보상금의 성격

▶ 공공기관 수입회복 등에 대한 기여금

- 부패행위로 발생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신고로 인하여 수입회복 등이 이루어 졌으므로 신고자에게 기여분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지급

▶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 치료비, 전직 · 이사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실직으로 인한 임금 상당액 등을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으로 산정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② 법적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제2항 ~ 제71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 제83조

③ 보상금 지급현황

구 분	보상금 지급(건)	보상금 지급액(천원)	비 고
계	183	5,277,454	
2006년 이전	44	526,307	
2007년	26	277,340	
2008년	18	328,175	
2009년	20	642,146	
2010년	23	603,641	
2011년	12	1,499,401	
2012년	40	1,400,4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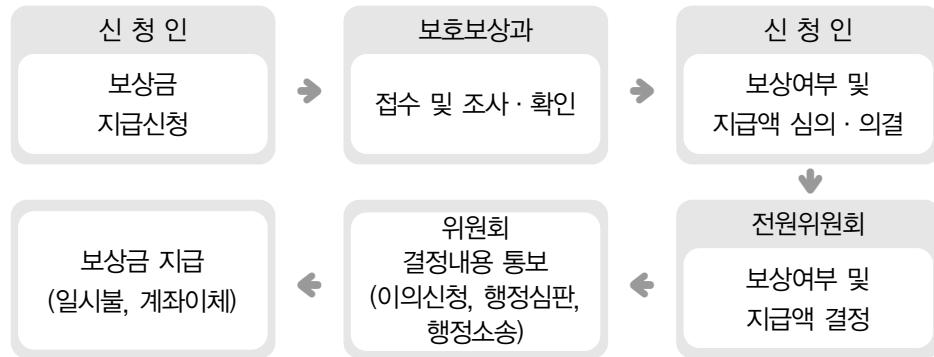
④ 보상금의 지급요건

-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 수입의 회복 · 증대, 비용절감 등이 신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치료비, 이사비, 실직, 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절감; 시행령 제72조》

- ▶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 · 과료 ·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은 제외함.

⑤ 보상금의 지급절차



① 지급신청

-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증대,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 부패행위 신고자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신청 가능

② 신청기한

-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함.

③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보상심의위원회》

- 구성(7명) : 보상위원장 1인, 당연직 위원 1인 및 위촉직 위원 5인
- 보상위원장(1) :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임명
 - 당연직위원(1) :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 지정
 - 위촉직위원(5) :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 자(임기 2년, 1차 연임 가능)
- 회의운영
- 원칙적으로 매분기 회의개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④ 전원위원회 결정

- 보상심의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을 기초로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 결정

⑤ 위원회 결정내용 통보 및 보상금 지급

- 결정내용 통보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안내

④ 보상금의 지급기준

① 보상금 지급기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보상대상 가액	지급기준	비 고
1억원이하	20%	
1억원초과 5억원이하	2천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14%	
5억원초과 20억원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초과금액의 10%	
20억원초과 40억원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초과금액의 6%	
40억원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초과금액의 4%	최대한도 20억

※ 보상대상가액 : 시행령 제72조제1항 각호 어느 하나의 부과 및 환수등으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 회복 · 중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

② 보상금 산정시 감액사유(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부패사건 해결의 기여정도
-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 · 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등

③ 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권익위법 시행령 제78조)

-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④ 보상금의 공제(권익위법 시행령 제78조)

- 보상금을 신청한 자가 동일한 원인에 따라 이미 권익위법의 보상금이나 포상금,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하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수령할 보상금의 액수가 이보다 많은 때에는 이미 수령한 보상금 등을 공제하여 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⑤ 지급기한(권익위법제70조)

-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산정이 있는 때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함.

-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보상금 지급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주요 보상금 지급 사례

1) [2011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비 편취 건 보상금 지급(최고 보상금)

- 신고자는 ○○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시공하면서 A회사, B회사 등이 가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설계내용대로 설치한 것처럼 하여 ○○시로부터 공사대금 약 5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2007년 신고함
- 검찰은 피신고자들이 약44억7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11명을 배임·사기죄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시는 2010년에 편취 공사대금 44억7천여만원, 2011년에 감리업체의 감리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전액 회수함.
- 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환수와 신고와의 직접 관련성 등을 검토하였고, 환수액과 추징금 합계 46여억 원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 보상금 3억7,103 만원을 지급함
- 또한, 2012년 신고로 인한 공사비 감액분 8억2,500여만 원 등을 확인하여 신고자에게 추가 보상금 3천3백9십여 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총 4억 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2) [2011년] 방위산업체의 국고손실 건 보상금 지급

- 신고자는 방위산업체인 C회사의 대표이사가 방위사업청과 잠수함용 주추진전지 등 각종 전지의 교체공사계약을 하면서 실제 노무량보다 4~5배 부풀려 계약하는 방법 등으로 20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의혹이 있고, 방위사업청 담당자는 이를 묵인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신고함
- 검찰은 관련업체 관계자 3명을 사기·횡령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징역 및 벌금형 등을 선고 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피신고자로부터 편취금액과 가산금 등 합계 81억여 원을 환수함
- 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환수액 중 65억원을 보상대상가액으로 보상금 4억 4천여만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한 점을 감안하여 산정된 보상금의 30%를 감액한 3억1,233만원을 지급함

3) [2011년] OO자주포 납품비리 건 보상금 지급

- 신고자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D회사가 1998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OO 자주포의 주 납품업체로 선정된 E회사에 OO 자주포의 핵심부품 684대를 공급하면서, 수입면장,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부가가치세 영수증 등을 조작하여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1대당 약 430만원의 차액을 남겨 25억여 원을 부당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신고함.

- 검찰은 피신고자 등 2명을 사기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 중 1명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방위사업청은 부당이득금, 가산금 등 42억 9,600여만 원을 환수함.
- 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환수와 신고와의 직접 관련성 등을 검토한 결과 환수액 중 26억여 원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 보상금 2억 6,371만여 원을 지급함.

4) [2012년] OO지구 폐기물 처리용역비 편취 및 감독관 묵인 건 보상금 지급

- 신고자는 OO공사로부터 OO지구에서 배출되는 가연성 폐합성수지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G회사와 폐기물 운송계약을 맺은 H회사가 적재한 폐기물을 폐기물재활용센터에 입고 하지 않고 당초 폐기물을 상차한 장소에 하차하거나 허위번호판을 교체해 계근하는 수법 등으로 운반실적을 과다계상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편취하고 있으며, 현장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OO공사 직원이 이를 묵인해 주거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신고함
- 검찰은 위 업체대표들에 대하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으며, OO공사는 피신고자가 공탁한 공탁금 6억여 원을 환입 처리함
- 권익위는 이 사건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환수와 신고와의 직접적 관련성 등을 검토한 결과 환수액 6억여 원을 보상대상가액으로 산정, 보상금 8,637만여 원을 지급함

4) 신고 포상금 제도

I 신고 포상금제도의 의의

- 권익위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포상금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 후 보상금 지급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피신고자의 처벌, 법령개정, 제도개선, 사회적 파급효과)의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부패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2005. 7. 1. 구 「부패방지법」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것임.

〈포상금 제도의 도입배경〉

- ➔ 2001년 법 제정 당시 포상금 규정은 없었으나, 신고로 인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보상금이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지급신청이 가능하고 단순히 공로만 인정될 경우에는 포상추천만 가능하고 포상금 지급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신고동기를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
- 국내 대표적인 내부공익신고 사례를 보면 신공항 부실공사, 철도청의 보수하자 비리, 주한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적십자사 혈액비리 제보처럼 국민의 안전 및 건강 등에 직결되거나 감사원 비리, 선거부정, 군 정보기관의 불법사찰 등 정권의 비민주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은 없었던 것이 대부분이었음.
- 따라서 이처럼 공익적 측면이 강한 유형의 제보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포상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법 개정에 반영

② 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제68조 제1항 · 제7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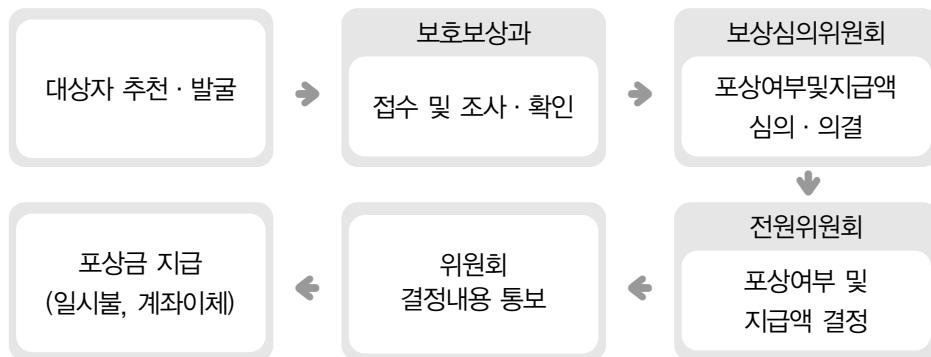
③ 포상금 지급현황

구 분	보상금 지급(건)	보상금 지급액(천원)	비 고
계	52	426,500	
2006년	3	35,000	
2007년	8	50,000	
2008년	6	100,000	
2009년	6	77,500	
2010년	10	59,000	
2011년	5	25,000	
2012년	14	80,000	

* 포상금제도, 2005. 7. 1. 이후 신고건부터 적용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④ 포상금의 지급절차



⑤ 포상금의 지급사유 및 기준

① 지급사유(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세부기준은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 별표를 적용

② 지급기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 제3항)

- 포상금 지급사유 중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억원 이하의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사유 중 금품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급한도액 2억원 범위에서 신고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③ 기타 포상금의 감액, 지급제한 등은 보상금 지급규정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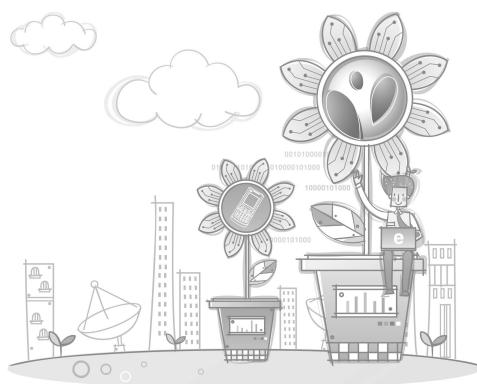
※ 포상금 지급사례

1) [2008년] 생동성시험결과 조작비리 건 포상금 지급 (최고 포상금)

- 신고자는 A대 약학연구소가 의약품 생동성시험 데이터를 조작하였고 이로 인해 약효가 미달된 불량의약품이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 시중에 유통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이 전 약학계에 성행하고 있어 조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신고함.
- 이로 인해 동 사건에 연루되었던 전 식약청장 및 관계자 등 23명이 기소되었고, 식약청은 이 사건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킴
- 권익위는 동 부패행위 신고로 부패행위자들의 처벌, 식약청의 고시개정 등 제도개선, 국내 생동성 시험 조사관행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등 공로를 인정하여 역대 최고 포상금인 5,000만원을 신고자에게 지급함

2) [2011년] OO체육회 전임지도자 훈련비편취 건 포상금 지급

- 신고자는 리듬체조 분야 전임 지도 업무 담당자들이 2007년부터 2009년 사이에 리듬체조 후보팀 훈련을 하면서 서울 모 호텔에서 매년 2회씩 숙박을 하던 중, 업주와 결탁하여 객실료 및 식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약 2,300만 원 이상의 훈련비를 부당하게 편취한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신고함.
- 검찰은 피의자들은 모두 기소유예 처분함.
- 권익위는 이 사건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즉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이고, 본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파급효과를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함.



III. 한국의 신고자 보호 · 보상제도

5) 보상금과 포상금 제도의 구별

구 분	포 상 금	보 상 금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지급 ※ 직접적인 환수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 (국민의 신고의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지급 ※ 환수금액의 일부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법 제68조제1항 및 시행령 제7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법 제68조제2항 · 제3항 · 제4항 및 시행령 제71조 ~ 제83조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려적, 재량적 성격 ○ 복합적 기준 (신분상 · 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재산 손실방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가적, 기속적 성격 ○ 단일기준(환수금) 												
지급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로 인하여 공소제기 · 기소유예 · 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 ·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신고와 관련된 정책등의 개선 · 중단 등으로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보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 · 과료 ·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 												
지급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기준(포상 · 보상사무운영지침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분상, 금전적 처분, 제도개선, 재산손실방지, 그 밖의 경우 - 2억원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품수수 자진신고의 경우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의 지급기준(시행령 제77조 제1항 관련 별표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보상대상기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지 급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 5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0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최대 보상금 20억원</p>	보상대상기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보상대상기액	지 급 기 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지급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천 · 발굴 → 지급대상자선정 → 보상위원회 → 심의 → 의결 → 전원위원회결정 → 포상금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상금 지급신청 → 보상위원회 심의 → 의결 → 전원위원회 결정 → 보상금 지급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1. 내부신고 방침마련의 필요성
2. 내부신고 방침의 전제요건
3. 내부신고 방침 마련 시 주요쟁점
4. 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¹²⁾

● 내부신고의 의의

① 내부신고는 신고문화 정착의 전제요건

- 신고자는 밀고자, 배반자로 인식되는 경향으로 인해, 신고 후 스스로의 힘만으로 조직 생활을 지속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내부신고가 ‘용기 있는 결단’으로 인정되는 사회풍토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제도의 효과적 운영이 필수적임

② 내부신고의 잠재적 비리 사전 차단 기능

- 신고에 따른 불이익으로부터 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지 않으면, 신고자들의 역할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음
- 신고자 보호제도는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내부비리가 외부에 알려질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잠재적 부정행위를 단념시킬 수 있음

③ 내부신고는 건전한 시민의식의 기반

- 각종 부패 등에 가담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불합리한 상황을 시정하며, 신고 후에도 보복을 당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양심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함
- 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활성화함에 따라 조직의 투명성·청렴성을 제고하고 보다 자유롭고 민주적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함

1. 내부신고 방침마련의 필요성

-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내부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용한 조직관리 전략이 될 수 있음

12) 참고자료 1. Whistleblowing Arrangements Code of Practice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08), 2. Good Practice Guide ‘Speak up Procedures’ (Institute of Business Ethics, 2007), 3.. Whistleblowing Best Practice (PCAW, 2004), 4. First To Know, ‘Robust International Reporting Programs (ISIS, 2004)

① 위험관리의 수단

- 조직의 내부문제가 언론이나 감독기관이 아닌 내부에서 우선적으로 제기되어 처리 될 수 있다면, 문제가 악화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조직의 대외적 평판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음
- ※ 내부신고절차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면 인터넷 및 소셜 네트워킹 수단의 발달로 직원이 조직의 부정행위를 손쉽게 공중에 유포할 수 있고 이는 해당조직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
- ※ 일부조사 결과(Institute of Business Ethics, 2012)에서 응답자의 21%가 내부신고자는 문제아(trouble maker)로 낙인찍힐 수 있어 이를 기피한다고 응답

② 실적유지와 증진의 수단

- 내부신고는 내부의 부정행위를 방지하여 파국적인 위기상황을 모면하게 할 수 있는 내부통제 기능으로 작용하여, 조직의 실적 유지와 증진을 위한 유용한 관리수단이 될 수 있음
- 내부신고는 조직의 부정행위 적발 및 예방을 통해 개방된 조직문화 형성에 기여하며 최상위층 관리자에게 조직의 중요한 의사결정 또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③ 직원, 고객 및 일반시민의 보호

- 유효한 내부신고 제도는 직원을 건강과 안전 및 집단 따돌림 등 생산성을 저해하는 문제로부터 보호할 수 있음
- 고객과 일반시민의 경우도 관행화된 비행(예컨대 위생기준의 미달, 실험데이터의 조작 등)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음

④ 회계적 손실의 축소

- 대부분의 조직들은 내부직원에 의한 사기(fraud)나 절도(theft)로부터 피해를 볼 수 있고 내부신고 절차는 이러한 피해를 축소시킬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 일부 조사결과(the 8th Ernst & Young Global Fraud Survey, 2003)에 의하면 기업에 대한 중대한 사기의 85%가 내부직원에 의해서 자행되었으며 20%에 해당하는 직원들이 부정행위자를 알고 있었다고 답변

⑤ 직원의 사기증진과 이직의 감소

- 내부신고 정책은 모든 계층의 직원들에게 조직이 부정행위에 대하여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인식 됨
- 내부신고 방침의 마련은 내부신고의 중요성에 대한 최고관리층의 의지 및 내부문제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발생 시 외부기관이 아닌 내부절차에 의한 우선 처리 원칙을 천명하는 계기가 됨

- 이를 통하여 일반직원과 관리층간 상호 신뢰가 존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어, 직무 만족도 증가와 이직률 감소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

⑥ 투자자의 신뢰향상

- 내부신고 제도는 특정조직에 효과적인 경영관리(Good Corporate Governance) 및 위험관리 수단의 구비를 입증하는 수단이 되므로 투자자의 특정조직에 대한 신뢰를 강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됨

⑦ 형벌의 감경

- 미국의 연방 판결지침(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은 근로자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보복의 위협 없이 신고를 할 수 있는 내부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조직에 대해서는 적발된 부정행위에 대한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

〈문화적 경험과 내부신고자의 인식〉

- ▶ 중국 : 내부신고자 보호정책의 도입은 공산정권에 의하여 가족관계, 사제관계 및 이웃관계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강요받았던 ‘문화혁명’의 공포를 연상시킴
- ▶ 독일 : 나치 독일의 게슈타포의 경험이나 동독의 비밀경찰(Stasi)의 역사적 경험이 내부신고 제 도입에 부정적으로 작용
- ▶ 남아공 : 내부신고자는 인종차별정책(apartheid) 시기의 밀고자로 인식되는 경향
- ▶ 이태리 : 영어의 내부신고자(whistleblower)에 해당하는 용어는 주로 마피아의 범죄행위를 폭로하는 자를 지칭
- ▶ 프랑스 : 내부신고자는 제2차 세계대전 중 비시정권의 나치독일 공모자를 연상하게 하고 있어, 프랑스는 익명신고에 대해 단호하게 부정적 입장을 견지
- ▶ 한국 : 부하의 상사에 대한 충성심이 조직 전체에 대한 충성심보다 강함
- ▶ 일본 : 평생고용과 엄격한 연공서열제는 근로자가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문제제기 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근로자에게 무한한 충성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음

2. 내부신고 방침의 전제요건

1) 조직의 윤리정책과 조직문화

- 내부신고 방침은 별도의 지침마련보다는 이미 수립된 조직의 윤리정책(ethics policy)의 일부에 포함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윤리정책은 이미 천명된 윤리적 가치에 부합하여 조직원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준거가 되고 있으며, 윤리적 가치를 내재화하고 모니터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또한 직원들에게 조직이 내부신고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신고자를 보호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조직의 확립된 윤리교육 프로그램이나 신뢰문화가 구축된 경우 효과적인 내부신고자 보호정책이 확립될 수 있음
- 변화에의 저항
 - 내부신고자 보호정책의 실시는 기존 조직문화의 변화 및 현상태(status quo)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어 내부저항을 유발할 소지가 있음
 - 조직내부에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았다면 직원들은 신고자 보호정책에 대하여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것임
 - 중간관리자층은 신고자 보호정책을 자신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 있음
 - 최고 경영진은 조직의 평판을 유지하는 내부신고의 순기능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일상 업무에서 벗어나 있을 수 있어 신고자 보호 정책을 수립 후 이를 다르게 운영할 가능성이 있음

2) 내부신고에 대한 인식의 확산

-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내부신고자 정책과 그 필요성을 조직의 윤리규범에 포함시키고 조직전반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커뮤니케이션
 - 조직원은 전반적인 내부신고 제도의 개요는 물론 구체적인 신고대상, 신고처, 신고 처리절차, 신고자 보호수단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함
 - 내부신고 정책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하여 윤리강령에 포함하거나 인트라넷 공지, 이메일 발송, 리플렛·핸드북 배포 등의 방법을 고려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 내부신고 정책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 등 직원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교육

- 내부신고 정책의 이해 심화를 위하여 신입직원 교육 또는 직원의 윤리교육 기회를 활용
- 업무수행과정 중 윤리적 갈등상황에 대한 Q&A를 통하여 내부신고에 대한 관리층의 의지를 전파할 수 있음

● 사건처리 결과 공지

- 내부신고 사건의 조사결과를 공지함으로써 경영진이 내부신고를 중시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으며, 신고처리 절차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
- 연차별 성과보고서 또는 연보 등에 내부신고의 처리 추이를 게재함으로써 내외적으로 조직의 내부신고 운영방침에 대한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음

〈견실한 내부신고자 보호방침 수립을 위한 구성요소〉

→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communication)

- 내부신고자 보호에 대한 최고관리자의 확고한 의지를 직원에게 알리고 보호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며 이를 위하여 주기적 교육 실시

→ 접근성의 강화(Accessibility)

- 퇴근 후 신고를 고려한 신고센터 운영시간 연장, 다양한 신고처의 인정 등 모든 직원이 필요시 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

→ 문화적 적합성(Cultural Appropriateness)

- 내부신고 보호제도 도입의 가장 큰 장애는 내부신고자에 대하여 배신자·변절자로 인식하는 문화적 거부감임
- 보호지침의 작성과 전파 과정에서 중립적인 용어사용 등 거부감을 완화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예: 고발이라는 용어를 지양)

→ 범용성(Universality)

- 신고체계를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해당 조직의 납품업자, 판매대행사, 합작사, 고객 등 이해관계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 신고자 비밀보장(Confidentiality)

-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위하여 일반적 계선라인과 다른 내부신고 처리 라인을 가동
- 신고의 비밀보장과 익명신고의 허용여부는 별개문제임을 유념
- 신고자의 비밀은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신뢰형성이 중요

→ 내부신고의 선별(Screening)

- 많은 경우 내부신고 도입 시 악의적 신고와 사소한 내용의 신고 폭주를 우려하여 내부신고 제도의 도입이 보류되고 있음
- 사소한 내용의 신고를 억제하기 위하여 신고요건이 상술된 서면신고를 신고의 요건으로 고려할 수 있음
- 악의적 신고 대책으로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 폐널티 부과를 고려할 수 있으나, 이것이 신고내용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실한 신고자의 신고를 저해하는 수단이 되서는 안 됨

→ 정보의 수집(Collect Data)

- 내부신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부정행위의 유형과 추이를 분석할 수 있도록 수집되어야 함
- 다수의 신고처를 운영하는 조직의 경우 수집된 정보를 상호 비교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개선을 위한 조치와 피드백(Remedial Action and Feedback)

- 신고자가 신고처리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면 내부신고 제도의 신뢰성을 상실
- 신고처리 결과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지하여(관련자 익명처리) 내부신고 제도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알릴 필요가 있음

→ 신고자의 보호(Employee Protection)

- 상사에 대한 충성이 조직에 대한 충성보다도 우선시되는 문화에서 신고자를 신분상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
- 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는 신고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임
- 장기적으로 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여부에 대한 추적관리를 통해 내부신고 체제의 신뢰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내부신고 방침 마련 시 주요쟁점

1) 개요

- 내부신고방침은 독립적인 지침의 형태로 제정 · 운용되거나 기존의 윤리강령에 포함되어 시행될 수 있음
- 내부신고방침은 신고자보호의 필요성, 지침의 이행 절차, 지침의 이행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 내부신고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하여 기술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 세부적으로 신고담당부서, 보호대상이 되는 내부신고의 범위, 익명신고 가능여부, 내부신고자 범위 등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함

2) 내부신고방침의 관할부서

- 일부 조사결과(Institute of Business Ethics, 2007)에 의하면, 조사대상 기업의 내부신고 처리부서는 윤리담당부서, 이사회, 법률자문관, 인사부서, 회계감사부서, 비서실 등 다양하게 분포
-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여 행동강령 교육·상담, 준수여부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음
 -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의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된 부서에서 내부신고자 관련 업무를 처리함이 바람직

〈신고접수처〉

- ➔ 권익위법 제56조에서는 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를 규정하면서 부패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강요·제의받은 경우에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
- ➔ 권익위법 제67조에서는 권익위법상의 신고자보호 규정의 준용과 관련하여 ①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피신고자의 소속기관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경우, ③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도 준용된다고 규정

3) 보호대상인 신고자의 범위

- 많은 조직에서 구성원은 물론 합작투자사의 파트너, 물품공급자까지 내부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뇌물수수, 선물·향응 수수 등 영업상 관례화된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 이점이 있음
 - 이를 위하여 신고처의 전화번호·이메일 등 연락처가 조직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부에 알려질 필요성이 있음
 - 같은 맥락에서 직원의 가족까지 신고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외국사례 : 신고자의 범위〉

- ▶ 미국의 사베인스-옥슬리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은 보호대상인 신고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을 보유한 회사의 노동자와 그 회사의 계약상대방(contractor), 하도급자(subcontractor), 대리인(agent)의 노동자도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자로 규정
- ▶ 일본의 공익통보자보호법은 노동기준법에서 규정하는 노동자로 정사원은 물론 아르바이트, 파견노동자 및 거래처사업자의 노동자, 공무원도 포함
- ▶ 영국의 공익신고법은 근로종사자(worker)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고만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근로종사자의 범위에는 현직·퇴직 근로자, 전직·현직, 유사근로자인 1인 사업자(independent contractor), 현직·퇴직 파견·알선 근로자(agency worker), 전직·현직 직업훈련생 등을 포함하는 근로종사자로 확대

4)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의 범위

- 조직의 신고자 보호정책에 의하여 보호되는 신고의 대상과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대상을 미리 결정하는 것이 중요
-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의 범위에는 권익위법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 및 공무원(공직자)행동강령의 위반행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조직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함시킬 수 있음

〈권익위법상의 보호대상인 신고행위〉

- ▶ 권익위법에는 부패행위와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보호대상인 신고로 규정
- ▶ 권익위법 제2조에서는 부패행위를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③ 위 ① 또는 ②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로 규정
- ▶ 공무원(공직자)행동강령 관련 설명은 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방지 정책에서 참조 가능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 다만, 개인적 고충(신고와 관련되지 않은 집단 따돌림 · 차별 · 성희롱 등)은 신고자보호 절차가 아닌 인사고충 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함
- 보호대상의 범위와 관련, 근로자들이 조직의 윤리정책에 대한 숙지를 통해 어떤 사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하고 필요한가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

5) 익명신고 허용여부

- 일부 조사결과(IBE, 2007)에 의하면 부정행위를 알고 있는 직원들의 52%가 신고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익명신고를 허용하자는 견해가 있음
 - 위 견해는 익명신고 허용 시 야기되는 신고남용의 문제점이 신고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과정에서 제거될 수 있다고 가정
- 그러나 적극적으로 익명신고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 익명신고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불완전한 수단임. 즉,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종종 정황으로부터 추론가능
 - 익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보다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혀내는데 주의가 집중될 수 있음
 - 익명신고를 허용하더라도 신고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신고자가 드러날 수 있음
 - 신고와 관련된 추가정보의 획득 곤란으로 신고사건의 조사 곤란
 - 타인 모해하려는 악의적인 신고나 신고남용 가능성 증가
 - 익명신고 허용은 조직 구성원 간의 신뢰형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익명신고가 중대한 부정행위 신고를 촉진한다는 실증적인 증거 없음
 - ※ 미국의 Enron사의 경우 시장에서 높이 평가받았던 익명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었으며 직원들에게 익명신고를 장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익명신고 제도가 회계부정의 발견에 무력했음이 드러남
 - 사건처리 결과에 대한 통지 대상이 없음
 - 익명신고를 불건전하게 보는 역사적 · 문화적 경험이 있음
- 익명신고의 허용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에서는 현실적으로 익명신고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제보내용을 평가하여 조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 익명신고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조건 이를 배척하는 것은 조직의 최선의 이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음

- 따라서 익명신고의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며, 익명신고 접수처가 제공되어야 함
- 또한 익명신고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참 고

→ 권익위법 제58조에서는 부패행위 신고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 및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익명신고의 경우 동법에 의한 신고자 보호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

6) 신고자의 부정한 동기

- 일부 직원의 경우 징계의 회피 또는 징계수준에 대한 협상을 목적으로 내부신고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음
 - 신고자 보호방침이 조직에 대해 손해를 가한 직원이 징계를 회피할 수 있는 보호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 함
-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감원 등을 회피하거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목적으로 신고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경우에도 신고내용은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이미 진행중인 감원계획을 중단하거나 신고자에게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즉,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신고를 제기한 행위에 따른 보복에 대한 보호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 공익적인 목적에서보다는 사적인 동기에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음
 - 예컨대 직원간 사적인 갈등관계에서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고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신고의 동기에도 불구하고 당해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을 가해서는 아니 됨
 - 즉, 부정한 동기에 의한 신고에 대한 징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신고내용이 허위로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고려될 수 있음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7) 신고의 방법 · 시기

● 신고의 방법

-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하며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

참 고

→ 공익신고자보호법 제8조에는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신고를 원칙으로 하나(제1항),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술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제2항), 이 경우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이를 읽어 들려주고 서명이나 도장을 받도록(제3항)하고 있음

- 내부신고 시 부정행위를 특정하고, 언제 · 어디서 발생했는지, 관련자가 누구인지, 현재에도 발생하고 있는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등의 수준의 정보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

● 신고의 시기

-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즉 부정행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기 이전에 신고하도록 유도
- 부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유도를 위하여 신고자보호지침에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후 신고내용이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징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암시를 해서는 아니 됨

8) 신고처

● 윤리담당관 등

- 윤리관련 문제를 일반 업무와 분리하여 직원들이 계선라인의 관리자보다는 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윤리담당관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경우가 다수

● 계선라인의 관리자

- 일부 조직의 경우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조직내부의 해결이 용이하도록 계선라인의 관리자에게 최초로 문제제기를 하도록 함

- 복수의 신고처
 - 계선라인의 관리자나 윤리담당관 등 복수의 신고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음
- 사내 옴부즈만
 - 일부 조직은 공식적 신고처이외에 신고예정자에 대한 조언·상담을 위하여 사내 옴부즈만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음. 사내 옴부즈만은 조사권은 없으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내부신고자를 지원

참 고

→ 공무원(공직자) 행동강령에서는 공무원(공직자)은(는) 행동강령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 소속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

9) Helpline과 Hotline

- 일부 조직의 경우 신고여부 또는 효율적 신고방법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사업자가 운영하는 Helpline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음
 - 이는 신고상담 시 철저한 비밀보장을 원하는 직원들의 희망을 반영한 것으로, 경영진도 helpline을 통해 조직의 문제를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보다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음
- Hotline은 외부 사업자가 공급하는 서비스라는 점은 helpline과 같으나 직접적으로 신고를 대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Hotline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계약을 체결한 조직의 사전에 지정된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신고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음
 - 지리적으로 격리된 다수의 지역에 지사가 있는 경우 또는 경영상 심각한 신뢰상실이 초래된 조직의 경우 hotline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음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helpline 시스템〉

▶ 개요

- 내부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할 수 있는 신고대행 시스템
- 위탁기관의 직원이 시스템에 접속하여 신고내용을 입력
- 신고 내용은 통신망을 통해 위탁기관에 전달되며, 기업은 내부 조사를 거쳐 처리결과를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자에게 회신
- 신고자 신원(IP 주소)은 핫라인 사업자만 파악할 수 있고 위탁기관에는 비공개

▶ 한국의 운영현황(2012. 9월 현재)

- 공직유관단체 50여개가 helpline 서비스 계약을 체결
- 민간기관으로서는 신세계·한전KPS 등이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는 고용노동부·경기도 교육청·서울특별시·경상남도 등이 가입

▶ 이용기관 만족도(한국)

- helpline 계약체결 후 내부신고의 증가는 미미(외국의 경우 hotline서비스 계약 체결 후 신고상담)
- 기존 내부신고 처리절차 중 신고접수 기능만 대행, 만족도가 높지 않음
- 응답기관 중 다수기관에서 비용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권익위원회가 내부신고 접수를 대행해 줄 것을 희망

10)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방법은 신고자보호정책, 교육자료 또는 FAQ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 공개적인 내부신고(신고내용 및 신고자 공개)가 가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는 조직문화가 내부신고 활성화를 위한 가장 이상적 상태
- 그러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신고자 보호지침에서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에 대한 확고한 원칙을 전명하여야 하며, 비밀보장의 핵심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임

11) 신고자에 대한 보복의 금지

-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어떠한 보복행위도 금지한다는 것을 내부신고자 보호지침에 명확히 하여야 함
- 신고자에 대하여 보복을 가한 자는 징계의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함
- 반면, 내부신고자 보호방침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악의적으로 신고한 자는 보호대상이 되지 않음을 명시

참 고

- ➔ 권익위법 제62조 제9항에서는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상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하여 권익위가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를 할 수 있음을 규정
- ➔ 권익위법 제91조의 과태료 규정에 의하면 동법을 위반하여 신고자에 대하여 신분상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

4. 신고자 보호제도의 운영

1) 신고자 보호방침에 대한 신뢰

- 신고접수 · 처리 일련의 과정에서 내부신고자가 신분노출 및 보복의 위험 없이 신고 사항이 처리된다는 신뢰 형성이 중요
 - 신고사항이 적절한 부서에 의해서 조사된다는 확신
 - 신고사항의 처리결과가 통보된다는 확신
 - 조사기관에서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기밀하게 처리한다는 확신
 - 조직에서 부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확신
- 위와 같은 신뢰는 내부신고 사건이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최고관리자가 보호방침의 이행에 모범을 보일 때 형성될 수 있음
 - 신고자 보호방침의 운영에 신뢰가 형성된다면 민감하거나 중대한 신고사건을 은폐하려는 압력을 뿌리칠 수 있음
 - 민감하거나 중대한 신고사건의 내부처리 과정 및 결과는 신고자 보호지침이 유효한지 아니면 단순한 겉치레에 불과한지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임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2) 내부신고의 상담

- 내부신고자는 공식적인 신고접수 이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선조직의 관리자가 상담역을 담당하는 것이 이상적이나, 일반적으로 윤리담당관(행동강령책임관)이 신고상담을 담당
 - 상담역은 윤리적 기준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지식과 기법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절한 교육이 필요

〈윤리문제 상담 시 체크포인트〉

- ➔ 문제되는 상황의 사실관계 파악
- ➔ 문제되는 상황으로 부터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파악
- ➔ 관련 문제와 관련된 내부 윤리규정(행동강령 규정)의 특정
-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여하여야 할 직원은 누구인지 결정
- ➔ 문제의 해결을 위한 행동방침 고려
- ➔ 관리자가 선호하는 문제해결 방식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 예측
- ➔ 유사한 문제의 반복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모색
- ➔ 문제가 심각한 경우 상급자 또는 내부 옴부즈만 등을 통한 해결 모색

- 내부신고자가 helpline 등 유선을 통해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한 신뢰 형성과 신고요지에 대한 신속한 파악을 위하여 표준상담요령(protocol)을 구비하는 것이 효과적

〈전화상담 프로토콜〉

- ➔ 문제가 무엇인가?
- ➔ 누가 연루되어 있으며 어떻게 왜 연관되었는가?
- ➔ 문제가 발생한 범위는?(조직의 지역적 문제인가 전반적 문제인가)
- ➔ 문제가 발생한 시기는? 문제의 발생빈도는? 문제가 현재에도 진행 중에 있는가?
직무와 관련된 문제인가 아니면 직무외적인 문제인가?
- ➔ 문제의 발생원인과 결과는?
- ➔ 문제로 인한 손실이나 피해의 규모는?
- ➔ 이러한 문제점을 알게 된 계기는? 직접 알게 된 것인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듣게 되었는가?
- ➔ 당신 이외에 그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말해 줄 수 있는가?

- 전화·이메일 또는 대화를 통한 상담(조사)기록은 향후 소송제기 등 법적 분쟁발생에 대비하여 세부적으로 기록되어 신고자보호 전담부서에서 보존

3) 내부신고의 접수

- 신고는 원칙적으로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하여야 함

〈신고서 기재사항〉

-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 피신고자 인적사항
- ➔ 신고취지 및 이유
- ➔ 증거서류

● 접수 시 확인사항

① 형식적 요건의 확인

- 신고서에 인적사항 등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신고내용이 특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

※ 전화(구술)신고, 전화문의·상담의 경우 권익위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하여 즉시 서면제출 요구 가능

② 실질적 요건의 확인

- 신고내용이 부폐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 또는 내부 운영지침에서 규정한 보호 대상이 되는 신고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③ 신분공개 동의 여부 확인

- 신고자가 신고의 처리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시

※ 권익위법 제64조 제1항에서는 권리위 및 신고사항을 이첩 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징계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로 볼 수 없는 경우
 - 익명·가명 신고
 - 부패행위·행동강령위반행위 또는 내부 운영지침에 의한 보호대상 신고가 아닌 개인적 고충·불만, 불친절 신고, 제도개선 요구 등
 -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허위 신고)

〈부정목적의 신고〉

- ➔ 권익위법 제57조에서는 허위신고의 경우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의 범위에서 제외됨을 명시하고 있으나 부정목적의 신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 ➔ 반면,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에서는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정당한 공익신고로 보지 않음을 명문화
- ➔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목적의 신고여부를 신고 접수 시의 정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명확한 금품요구 증거 등 개별 사례별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 따라서 노동조합원이 단체교섭 결렬 후 부패신고를 하였다거나, 보상금을 목적으로 부패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정목적의 신고라 단정할 수 없음

4) 신고사건의 조사

- 조사 전 유의사항
 - 신고사건의 조사자는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을 위하여 가능한한 최소화
 -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에 대한 주기적 통보로 신고사건이 신중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신뢰를 갖도록 함(신고자가 처리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내부 신고처리에 대한 불신으로 감독·언론기관에 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
 - 사전에 신고사건의 처리기한을 공지하고, 처리기한·처리과정을 주기적 모니터링
 - 신고자가 신분공개의 우려를 느끼지 않도록 조용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 선택
 - 조사 시 외부인 등의 잣은 출입을 통제
- 조사 시 유의사항
 - 조사의 목적은 신고사실의 진위여부의 확인임
 -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 등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 등에

대하여 형 또는 징계처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고 권익위법에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

〈주요확인 사항〉

- ▶ 소속 · 직급 · 성명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 ▶ 신고의 경위 · 취지 및 이유
- ▶ 신고내용이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부패행위 등)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관계
-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 ▶ 내부신고 전에 감독 ·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 · 고소 · 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 ▶ 신고자가 자체조사 감독 ·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 신분보장제도 안내 및 권익위 통보

- 신고자 등에게 신고로 인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또는 차별에 대한 우려는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로서 신중한 안내가 필요
- 권익위법에 의한 신고자의 신분보장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에 따른 신분상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권익위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을 안내
- 신고자 등이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권익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을 안내
- 신분상 비밀유지를 위해서는 위원회뿐만 아니라 신고자 등 자신도 특별히 노력하여야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킴
- 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또는 신고 협조자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신고자 등에 대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에 권익위에 사건경위 통보

● 조사결과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 권익위법 제57조에 의하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동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자 임에 각별히 유의
-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라 하여도 조직문화의 개선 등 필요한 후속조치 실시

5) 내부신고 보호제도 운영상황 점검

- 최고경영진 또는 이사회는 내부신고 처리절차에 대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주기적 점검으로 내부신고 보호제도의 취약점을 개선
 - 최고경영진·이사회가 내부신고절차를 내부통제 수단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는가?
 - 공직윤리와 관련된 사건 중 사전에 내부신고 절차에 의하여 제기되었어야 바람직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떠한 이유에서 기인했는가?
 - 내부신고 지침의 유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감사가 수행된 적이 있는가?
 - 신고와 관련되어 취해진 조치 또는 조사 및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취해진 후속행위의 진행상황을 추적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있는가?
 - 신고사건 조사관련 증거수집을 위한 적절한 절차가 있는가?
 - 신고자 비밀보장 문제가 효과적으로 처리되고 있는가?
 - 신고자에 대한 시의적절한 피드백이 존재하는가?
 - 신고제기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원이 있는가?
 - 내부신고 방침에 대한 직원의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는가?
- 내부신고자 보호지침의 효과성 지표
 - 내부신고 보호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음.
 - 일부 조사결과(IBE, 2007)에 의하면 내부신고자 보호와 관련된 전화상담 건은 총 근로자수의 0.5%에서 1% 범위 내이며 그 중 의미있는 전화상담 건수는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
 - 다만, 단 한건의 의미있는 내부신고라도 조직의 평판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전화 상담 건수가 내부신고 제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지표가 될 수 없음

※ 내부신고보호 관련 전화상담이 많은 것은 개방적인 조직문화의 영향일 수 있으나 신고자 보호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음

※ 한편, 전화상담이 적은 경우 '억눌린' 내부신고가 많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반면 부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상급자와 논의할 수 있는 개방적 조직문화의 징표일 수 있음

-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에 따른 각 기관의 청렴도 수준이 내부신고 상담 전화건수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음

6) 효율적인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① 신고자 보호방침의 수립

- 내부신고자 보호방침이 권리위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관련 조항에 부합하는가?
- 내부신고 보호방침이 기존의 윤리강령과 조화 되는가?
-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부서가 지정되었는가?
- 내부신고 범위와 보호대상인 신고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나?
- 직원들의 내부신고 관련 질의, 상담, 내부신고 제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규정이 있는가?
- 경영진의 보호제도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가이드 마련 또는 교육수요가 파악이 되었는가?
- 내부 옴부즈만의 지정 또는 외부 사업자에 의한 신고 및 상담 위탁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있었는가?
- 직원들에게 내부신고자 보호제도를 인식시키기 위한 수단이 충분한가?
- 내부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주기적 점검계획이 포함되어 있는가?

② 내부신고자 보호지침 규정

- 지침의 서문에 보호제도 운영과 관련한 기관장의 의지가 담겨 있는가?
- 보호지침 운영의 목적과 신고자 보호의 제반원칙(신고자 비밀보장 · 신고자에 대한 보복금지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지침에 의하여 보호되는 내부신고의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었는가?
- 내부신고 관련 질의나 상담을 돋기 위한 절차규정이 있는가?
- 내부신고 접수 후 후속조치(조사절차, 조사 후 조치사항 등)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가?
- 내부신고자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 통보가 규정되어 있는가?
- 보호제도의 운영을 감독할 책임자가 지정되었는가?

7) 내부신고자 보호지침 제정 사례

● 국토교통부

- 명칭 :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 형식 · 시행일 : 훈령, 2013. 4. 16. 시행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 특이사항

- 신고방법을 광범위하게 인정(서면신고 이외에 전화 등을 통한 신고가능)
 - 보호대상이 제외되는 신고를 명문화
- ※ 허위신고,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협조자가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보호제외
- 신고심사위원회 구성 :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책임감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심의

● 고용노동부

- 명칭 : 부패행위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형식 · 시행일 : 훈령, 2011. 8. 19. 시행
- 특이사항
 - 신고방법을 광범위하게 인정 및 보호대상이 제외되는 신고를 명문화
 - 신고활성화를 위한 교육(재직자 반기 1회, 신규임용 시)

● 서울특별시

- 명칭 :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형식 · 시행일 : 조례, 2013. 8. 1. 시행
- 특이사항
 - 부패신고뿐 아니라 공익신고에도 동 조례 적용
 - 부패신고에 따른 불이익조치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조치를 불이익조치로 보고 있음)
 -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 및 공익제보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시장의 의무를 규정
 - 시장 직속으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익제보 조사자문, 공익제보자 보호 · 지원임무 수행
 - 신고접수처의 다양화: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시, 시의원, 공익제보자문위원회
 - 부패신고자에게 신고와 관련되어 소요된 의료비, 변호사 등 수임료,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손실액 등에 대한 구조금 지급 신청권 인정
 -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지정하여 조달계약 시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
 - 시장에게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 개발 의무를 명시하고,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하여 비용지원

8) 참고자료 : 유엔반부패협약(UNCAC) 제33조에 의한 내부신고자 보호

【UNCAC 제33조】 각 당사국은 이 협약에 따라 규정된 범죄와 관련된 사실을 선의(in good faith)와 합리적 근거(reasonable grounds)에 기하여 관할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신고한 자를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는 적절한 조치를 자국의 국내법 체계에 편입시킬 것을 검토한다.

● 의의

- 2003년에 체결된 유엔반부패협약 제33조에서는 협약당사자국이 내부신고자 보호 조치를 국내법에 편입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음
- 적용범위: 당사국에만 적용(국제기구에 적용되지 않음)
- 보호의 종류: 신고자 보호(증인보호는 제32조)
 - 개념적으로 제33조는 증거가 다소 불충분한 부패의 징후에 대하여 신고자가 적절한 시기에 문제를 제기하여, 어떠한 법령위반 행위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가 취해지는 것을 상정
 - 현실적으로 신고자가 확고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소송절차에서 증인(witness)이 되는 경우도 있어 신고자와 증인의 개념이 중복

● 무엇으로부터의 보호인가?

- 제33조는 불이익을 ‘어떠한 부당한 대우(any unjustified treatment)’로 포괄적으로 규정, 신체에의 위해 또는 해고 등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미묘한 경우(예: 강요된 사직)도 불이익으로 파악 가능

● 누구를 보호하는가?

- 제33조는 위반사실을 신고한 자라면 ‘어떠한 자(any person)’라도 적용되므로 보호대상의 범위를 넓힘(일반 시민도 보호대상 가능)
- 반면, 각국의 입법례에서는 “whistleblower”라는 용어가 일반적인데, 이는 주로 조직구성원을 지칭하고 국내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신고자에게 요구되는 사항

- 제33조에서는 신고자에게 ‘합리적인 근거(reasonable grounds)’ 이외에 ‘신의성실(good faith)’을 요구하고 있음
- ‘합리적인 근거’의 개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있으나(신고자가 부정행위를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면 그 신고가 사실이 아니었다 –mistaken– 하여도 보호),

- ‘신의성실’은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일반화된 정의가 없음

● 누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신고처)?

- 제33조는 ‘관할기관(competent authorities)’에 신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부패방지위원회 · 옴부즈만 · 회계감사기관 · 경찰 등이 포함될 수 있음

※ 다만, 언론이나 익명 신고접수기관에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국내법에서는 달리 정할 수 있음

● UNCAC 제33조의 주요쟁점

– 신고자의 비밀보장

- 신고자의 동의 없이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신고한 조직 이외에서는 알려지지 않아야 함. 한국의 경우 신고자가 기명으로 신고하기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사관들에게 신고자 비밀보장을 위해 엄격한 요구를 하고 있어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고 있음
- 페루의 경우 신고자의 성명은 인식코드(identification code)로 대체

– 익명신고

- 익명신고는 신고자 보호 측면에서 불완전한 수단임. 즉,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종종 정황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으며, 익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신고내용의 확인보다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밝혀내는데 주의가 집중될 수 있음
- 한편, 익명신고의 경우 법집행자가 사건을 처리해 나가기 곤란하며, 익명신고를 불건전하게 보는 문화가 있음
- 그러나, 익명신고의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하며, 익명신고 접수처가 제공되어야 함. 한편, 익명신고자로부터 추가적인 정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함

– 민간부문의 내부신고

- 부패는 종종 공공부문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나, 유엔반부패협약의 경우 공공부문의 부패는 민간부문과 연계되어 발생한다는 보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있음
- 따라서 UNCAC 제33조는 단일법에 의해서든 개별법에 의해서든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도 적용되어야 함
-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경우 가이드라인을 통해 부패행위는 주주가치를 파괴하고 기업의 발전을 위협하며 취업기회 및 ‘good governance’를 위협하는 것으로 규정

- 즉, 국제상공회의소의 경우 신고가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내부적 위험관리의 수단이며, 근로자들은 기업의 비행을 예방하고 탐지할 수 있는 정보의 유용한 제 공원이라는 인식이 있음
- 일부 증권거래소(영국·미국)의 경우 상장요건으로 ‘상장회사는 신고자 보호계획을 가져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음

- 신고자 보호기관

- 신고자 보호기관의 결정은 전적으로 개별 국가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신고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제소를 허용하여야 하며, 일부 국가(남아공, 영국)의 경우 법원을 신고자 보호기관의 중핵으로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법원의 경우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 기관에서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슬로베니아의 경우와 같이 부패방지위원회가 신고자보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민원의 마지막 호소기관이라는 속성에서 옴부즈만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적합 할 수 있음
- 한국의 경우, 부패방지위원회와 옴부즈만이 통합된 신설기관(ACRC)에서 신고자 보호 역할을 담당
- 한편, 신고자에 의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이력관리(follow-up)의 필요성이 시급한데, 이는 신고를 저해하는 주요인이 신고사건에 대한 이력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연구결과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

- 제3자의 권리 및 면책

- 신고자는 종종 선의의 실수를 할 수 있으며, 그들의 주장은 제3자의 명예를 훼손 할 수 있음
- 일부 국가의 경우 신고자에게 민사·형사상 면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4조에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 반면, 신고자에게 완전한 민사상 면책이 허용된 경우, 신고로 인하여 명예훼손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일본의 경우, 2004년 신고자보호법에서는 신고자에게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이는 신고자가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합리적 방법임

IV. 신고자 보호를 위한 내부신고 방침 마련

- 신의성실(Good Fa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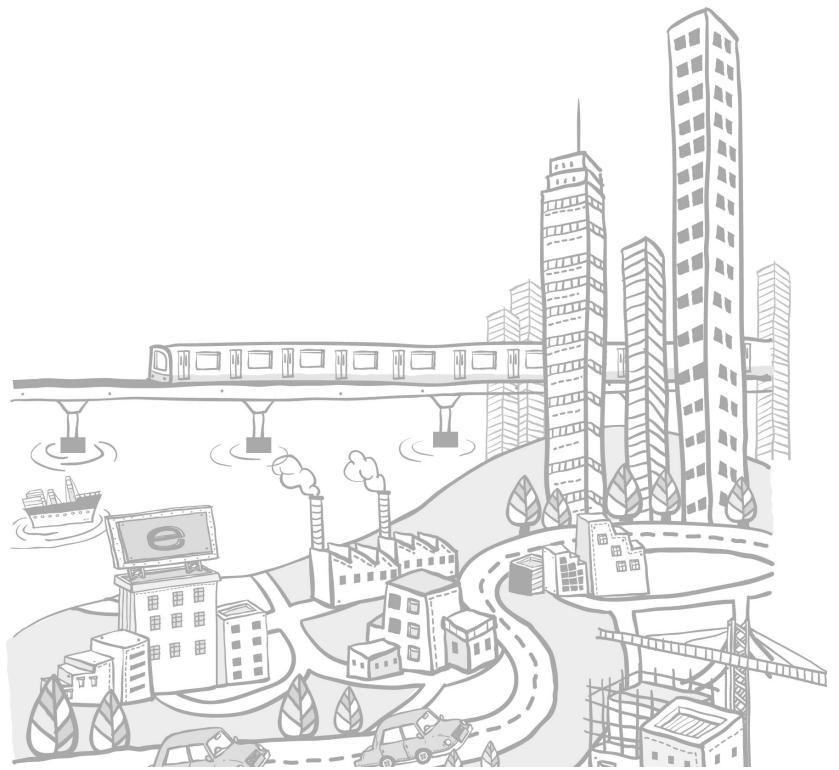
- 신고자 보호요건으로 ‘신의성실’이 요구되고, 그것에 대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채 있다면, 모든 사건에서 신고자의 신고동기를 의심하게 하는 법률적 가능성을 남겨 둔 것임
- 신고에 대한 ‘합리적 근거’ 이외에 무엇이 요구되는가? 그리고 ‘신고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
- 또한 신고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신의성실’을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음
- ‘신의성실’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에 대한 법적 정의를 한정적(narrowly)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국의 경우, 신고자가 ‘신고가 거짓임을 알지 못한 것’으로 한정)
- 또한 신의성실이 결여되었다고 밝혀지기 전까지는 이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

- 언론기관에의 제보

- 언론기관의 역할은 중요하나, 언론기관은 제보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상적인 신고접수처로 볼 수 없음
- 반면, 신고자가 신뢰하고 신고할 수 있는 신고접수처가 언론기관으로 축소(한정) 되는 경우에 있어서, 신고자는 언론기관에 접근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느낄 수 있음
- 따라서 언론기관 제보 허용의 문제는 신고자보호법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특히 국제적인 인권 회의체에서 언론의 자유(freedom of speech)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함
- 신고자보호법에서 언론기관 제보문제를 ‘예외적으로 중대하고 긴급한 사건의 경우에서 마지막 호소수단’(a last resort, except in very serious and urgent cases)으로 다루는 것이 합리적임(남아공, 영국)

V 부 록

-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¹³⁾ (2013.5.9 수정)〉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1 제도 개요	X	O	X	O	X	O
(근거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구 부패방지법, 2002) *공직사회의 부패행위로 제한적 적용, 범위안에서 철저한 보호 지향 *최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2011)으로 보호범위 확대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 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2012) : 연방정부 내부 고발자 보호법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1989, 세계 최초 독립법) ¹⁴⁾ 부정주장법(False Claims Act, 1986) : 정부관련 민간 부정행위 Sarbanes-Oxley 기업 개혁 법 (Sarbanes-Oxley Corporate Reform Act, 2002) : 민간부문까지 확대 *환경, 건강, 고용관련 분야: 개별법 형태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지방 50개주, 콜롬비아 특별구에서 내부고발자보호법 시행 *민간/정부부문, 연방/지방정부간 법적 보호수단이 다름.	공익 정보 공개 법 (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고용권리법(Employment Right Act, 1996)에 신고보호조항을 포함시킴 *북아일랜드는 적용에서 제외 *정부기관, 기업 등 모든 조직의 고용인에게 적용(국가 보안 및 경찰공무원 제외) *적법한 신고행위 및 보호대상을 법에 명시 *근로관계상 차별을 부당노동 행위로 규정하는 노동관계적 접근: 제도 도입 이후 시행착오와 이를 통한 개혁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 ¹⁵⁾	공직자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Public Sector Whistleblowing Act, 2001) -연방공무원법에 관련 규정 *북아일랜드는 적용에서 제외 *연방공무원법에 관련 규정 *각 분야별 5개 법률(직장관계법, 직업건강안전법 등)에서 개별 규정 *주차원에서 보호법 제정·운영(6개주 중 4개주) : 내부고발자 보호법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1994, 퀸즈랜드주, 가장 모범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법)	공 공 서 비 스 법 (Public Service Act, 1999) :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에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부분적으로 규정,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에 대한 독립법은 아님) -연방공무원법에 관련 규정 -각 분야별 5개 법률(직장관계법, 직업건강안전법 등)에서 개별 규정 -주차원에서 보호법 제정·운영(6개주 중 4개주) : 내부고발자 보호법 (Whistleblowers Protection Act, 1994, 퀸즈랜드주, 가장 모범적인 내부고발자 보호법)	공익통보자보호법 (2004)
독립법 (수행 기관)	O	O	X	O	X	X
	국민권익위원회(구 국가청렴위원회)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 소속이었던 특별조사국	공무원인사위원회(CSC)(고충부서) 활용	공공서비스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	공공서비스위원회가 담당(공공서비스위원 및 실적주의보호위)	기관에 대한 언급이 없이 신고 대상 업무를 관掌하는 기관이

13) 내부공익신고보호제도의 국가간 비교 연구(2006.8, 이상범) 논문을 기초로 정리한 자료임(상기 논문 이외의 자료에서 발췌한 경우 별도로 출처를 명시함)

V. 부 록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p>(OSC, 1979)이 독립 기관으로 분리(1989)</p> <p>*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행정기관</p> <p>-수사·기소권, 징계권</p> <p>-증인조사, 증거접수, 소환장발부, 서면심문에 대한 답변명령</p> <p>-관련소송에서 특별 조사청장의 의견진술권(2012 신설)¹⁶⁾</p> <p>-임무 :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방지, 연방공무원을 위한 신고통로의 제공</p>	<p>알선중재위원회 운영체제</p> <p>*독립된 신고자 보호보상기관 없음 : 인사위원회, 고용심판소에서 신고자의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함</p>	<p>-판무관(Public Service Commissioner)에게 신고토록 규정</p> <p>-판무관이 신고사안의 조사처리</p> <p>-처리하지 못한 사안은 의회 보고</p>	<p>원이 업무 관장)</p>	처리토록 규정
2. 신고 주체/ 신고 의무자	<p>누구나</p> <p>공직자 신고의무</p> <p>-외국인 포함</p> <p>-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험증거 함께 제시)</p>	<p>국민</p> <p>공무원 신고의무</p> <p>*신고권한의 제한 없음</p> <p>-서면에 의하지 않은 신고도 인정¹⁷⁾</p> <p>-신고를 금지한다는 정책·서약·합의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의 법령정보란에 해당금지 규정이 공직자의 권리(신고권 등)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2012 신설)¹⁸⁾</p>	<p>근로자</p> <p>근로자 신고의무</p> <p>국가보안 및 경찰공무원 제외</p>	<p>공직자</p> <p>공무원 신고의무</p> <p>신고자의 신분 및 서명, 신고상대방, 해당부정행위 등에 대한 근거 등을 명시</p>	<p>국민</p> <p>공무원공공기관 관계자 포함 신고의무(퀸즈랜드)</p> <p>(퀸즈랜드)</p> <p>*단, 법에 정하여진 민간부문의 신고대상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 가능</p> <p>-익명 가능, 어떠한 방식으로도 가능</p>	<p>해당 노제공처의 근로자</p> <p>X</p> <p>-민간기업의 직원, 파견 직원, 거래처 직원, 일반직 공무원</p>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신고 청구 지정	O	O	O	O	O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 공직자의 경우 위원회, 수사기관, 감사기관 - 신고자 보호의 경우 위원회, 수사기관, 감사기관, 소속 기관 및 감독기관에 신고한 경우도 보호대상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조사국의 조사관, 행정기관의 감사관 또는 기관장이 임명한 관련 공무원 - 신고자의 상급자 (Supervisor)나 위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 신고한 경우도 보호(2012 신설)¹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내부 보고절차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보고, 이후 내각각료, 규제기관 등 담당 정부기관에 제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서비스위원회의 판무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퀸즈랜드주) 예외적으로 정하는 경우 형사재판위원회 *법에서 민간부문의 신고대상을 정한 경우 : 법에서 규정한 관련기관의 기관장에게 했을 경우에만 신고로 인정(익명신고 가능, 해당기관의 절차에 따라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자의 노무제공처, 노무제공처가 미리 정한자, 통보대상 사실에 대하여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신고통로의 제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신고사실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처/노무제공처가 미리 정한 자에, ② 신고사실이 확실히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권한있는 행정기관에 신고 ③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믿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신고와 관련된 증거인멸, 위조, 변조우려가 있는 경우/노무제공처로부터 신고를 하지 말라고 요구받은 경우/서면 신고후 20일이 경과해도 조치가 없는 경우/급박한 위험 이 있다고 믿기에 충분히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 확대를 막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신고
신고 절차 제한	X	X	O	X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내부 사용자에게 보고 및 시정절차 → 담당 정부기관에 제보→ 대외적 신고 확산의 절차를 거쳐야 함 		(퀸즈랜드주) 법에서 규정한 관련기관의 기관장에게 했을 경우에만 신고로 인정	

V. 부 록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하위 신고 처벌 규정	x	x	x	o	o	x
	성실의무 위반시 형 법상 무고죄 등으로 처벌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신고 금지, 위반 시 즉시에서 10,000 미만의 벌금형	(퀸즈랜드주)고의로 허위 또는 부정한 정 보를 제공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형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른 신고 규정
3. 신고 대상	민간부문 포함	x	o	o	x	o(제한적 ²⁰⁾)
	부패행위 외 보호	x	o	o	o	o
(세부 신고 대상)	공직자의 공공부문 에서의 부패행위로 제한	-공공분야(내부고발 자보호법) : 부패행 위의 ①법·지침 또는 규정 위반, ② 중대한 관리 부실 ③중대한 재정 낭 비, ④권한남용, ⑤ 공공의 건강/안전 에 대한 실질적이 고 구체적인 위험 -정부관련 민간부정 행위(부정주장법) -민간분야까지 확대: Sarbanes-Oxley 기업개혁법 (Sarbanes-Oxley Corporate Reform Act, 2002) : 민간 기업에서 해고된 직원의 법적구제를 포함한 보호조항 규정 (보호대상 신고 범위 확대2012 신설) -해당 정보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 더라도 보호 -신고자의 신고 동기 를 불문하고 보호 -서면에 의하지 않 은 신고도 보호 -근무중이 아닌 때에 행한 신고도 보호	공공부문, 민간부문, 제3센터를 모두 포 함한 국가내 모든 분 야의 부패행위 ① 범죄행위, ② 법적 의무위반, ③ 부정행 위, ④ 개인의 건강/ 안전의 위협, ⑤ 환 경침해, ⑥ 기타 이와 관련한 정보의 고의 적 은폐 *위반사항이 발생한 지역이 국외인지 여부, 적용법이 영 국의 국내법인지 아닌지 여부에 관 계없이 적용	공공부문의 위법한 작위 또는 부작위 ① 캐나다 내에서 유 효한 법률 위반, ② 공공재원의 낭비, ③ 공중보건/환경안전 에 대한 위험, ④ 공 공기관의 문서화된 공공정책/명령 위반, ⑤ 중대한 과실이나 작권남용	① 공공영역에 영향 을 미치는 범죄 및 부정, ② 정부재원의 남용·오용·부실한 관리, ③ 공공의 건강 /안전의 위험 (퀸즈 랜드주, 환경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 인 위험 추가) -(퀸즈랜드주) 민간 부문의 신고는 제 한적으로 규정 : ①장애인의 보건 과 안전에 대한 중 대하고 구체적인 위 험, ② 법령의 위반 등으로부터 발생하 는 환경에 대한 실 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 ③ 공익제보로 인하여 제보자에게 기해지는 보복	주로 민간분야를 대 상으로 규정하며, 국 가공무원법에도 적 용 ① 국민의 생명·신 체의 보호, ② 소비 자 이익의 옹호, ③ 환경보전, ④ 공정한 경쟁의 확보, ⑤ 국 민의 생명/신체/재산 /기타 이익 보호에 관련된 법률에 위반 한 범죄행위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대상 행위 발생 후 신고까지의 기간 경과에 관계 없이 보호 -공직자의 통상업무 수행과정에서 행해진 신고도 보호 -위 경우 불이익한 인사처분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가해진 경우에 보호 				
(신고 제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량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정책 결정에 관한 정보 교환은 신고에 포함하지 않음 :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라도 신고대상 행위(법지침 위반 등)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경우에는 신고에 포함 (2012 신설)²²⁾ -신고당시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어야 신고로 인정된다^{7)준} :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판단했을 때 신고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정도-2012 개정)²³⁾ 	<p style="margin-left: 20px;">〈제한적 신고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적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어야 함 -충분히 진실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어야 함 <p style="margin-left: 20px;">*조사거부사항 : ① 신고내용이 사소하고 경미하거나 소권 위반인 경우, ② 부정행위나 부작위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주장하거나 제시하지 못한 경우, ③ 신고와 관련해 현행법 위반 또는 특수한 신뢰관계 위반인 경우, ④ 합리적 판단이 결여되거나 신의성실에 위반한 경우</p>			
미디어 고발의 보호 ²⁴⁾	X	X	불명확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의 해석상 미디어에의 제보도 보호대상 신고로 보는 입장 있음(Public Concern at Work, PCAW시민단체) 		<p style="margin-left: 20px;">매스미디어에 대한 폭로까지 보호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결정을 못내림 (퀸즈랜드신문, 방송 등 대외적인 기관에</p>	

V. 부 록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신고 외 행위 보호			-이와 관련한 명확 한 규정은 없음		대한 광범위한 제보 는 할 수 있음.	
	X	O	X	X	X	X
4 처리 절차 등	처리 절차 신고접수→내용 확인→조사기관 이첩 (고위공직자의 경우 검찰에 고발)→조사 기관의 처리결과 통보→신고자에 결과 통지	개인으로 하여금 법률을 위반하도록 하는 명령에 따르기를 거절하는 경우도 보호대상	-부패행위 발견→ 특별조사부 신고 접수→신고처리반 내용 검토→각하 또는 처리결정 -특별조사관의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작성, 의회 제출 ²⁵⁾		-부패행위 발견→ 판무관 접수, 검토→신고자 보호조치→조사결과 통보→구제 -판무관의 활동 등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 ²⁶⁾	(퀸즈랜드) 내부신고를 접수한 공공기관은 연도별 보고서 작성, 의회보고
	사전 고지/ 홍보 제도	X	O ²⁷⁾	X	O	X
5. 보호 5-1 신분 보장	결과통지					
		O	O	X	X	O
	민형사 면책	O	O	X(불명확 ²⁸⁾)	X(불명확 ²⁸⁾)	O X
	신고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해당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민형사 사건 모두에 법률적 면책과 사면 규정			신고자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分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신고자	○	○	X	○	○	X
비밀 유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 금지(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예외 : 국가안전, 외교상조치를 위해 대통령이 특별히 비밀로 할 것을 요 구한 정보의 경우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분공개 금지(법정 예외사항 제외)		법률이 허용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누 구도 신고자의 신원 을 공개할 수 없고 공개가 가능한 방법 으로 신고 사실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해 서는 아니됨	신고자의 신분 등 비 공개대상 정보누설 시 처벌	
비밀 준수의무 면책	○	X	X	○	○	X
협조자 보호	책임의 면면 : 성실 한 신고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 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국가안보 또는 외 교행위에 관한 이 익을 위해 특별히 비밀유지를 규정하 지 않은 경우에만 고발대상이 됨 ⁽³⁰⁾	정부비밀법(Official Secrets Act)위반과 같이 불법 행위가 수 반된 내부신고의 경 우 보호안됨	합리적인 판단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신고는 직장 에 대한 충성이나 비 밀보장 의무에 위배 되지 않음	합리적이고 선의인 신고의 경우 비밀유 지의무 위반이 아닌 것으로 함	
	협조자에 대하여도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면면이 가능	법률 등에 의하여 부 여된 탄원권, 고발 권, 소원권 행사를 법률적으로 지원/증 연하였다는 이유로, 기관의 감독관이나 특별조사관에게 대 한 정보 제공에의 협 력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하는 경우에 보복으로 규정하여 보호 *많은 민간부분 신 고자 보호법률에서 위반행위 관련 법 적 절차에서 증언/ 참여/협조한 자, 위 반행위에 참가하기 를 거부/반대한 자, 신고/증언/협력 등 이 예정된 자도 보 호대상으로 규정				

V. 부 록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원상 회복	명령적 구제 ³¹⁾	X	O	O	O	X
고용상 불이익 구제 (원상 회복)	O	O	O	O	O	O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등의 금지 규정 -보호대상 : 신고자 (협조자 포함, 외국인임을 불문) -신고로 인한 불이익처분을 당하였거나, 당할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분 보장조치 등 요구 가능(강제성없어 명령적 구제라고 할 수 없음) -위원회 조사결과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 : ①신고자가 공직자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 관계기관장은 이에 따라야 함. ②신고자가 공직자가 아닌 경우에는 관계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권고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조사관이 부당한 인사처분이 내려졌거나 내려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45일 이내에 실적제도보호위원회에 그러한 인사조치를 보류해 줄것을 명령하도록 요청 가능,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적제도보호위원회는 보류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을 권리 규정 -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처분에 대한 실적제도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해당 기관의 신고자에 대한 조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포함, 2012 신설)³²⁾ -“신고를 금지한다는 정책·서약·합의” 등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이 규정에 신고권 제한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로 인한 인사조치는 금지된 인사조치로 봄(2012 신설)³³⁾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의 금지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퀀즈랜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복이 있다고 산업위원회 또는 대법원이 판단한 경우 보복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음 -신고자가 금지명령의 신청에 대한 최종판단을 기다리는 동안 가금지 명령을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퀀즈랜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복금지 규정 -보복에 대한 구제 수단으로서의 민사 및 형사소송 -징계, 보직임명, 인사이동, 부당한 처우 등에 대한 상소권 또는 재심청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파견 계약의 해제는 무효 -강등, 감봉, 파견근로자의 교대요구 등 기타 불이익 취급의 금지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分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p>〈SO기업개혁법〉</p> <p>-신고자에 대한 불법적 보복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제소, 노동부장관은 법원의 청문없이 재고용 명령 가능</p>				
직무적	O	O	X	X	O	X
인사 조치 (전직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직자인 신고자가 전직, 전출입, 파견 근무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는 중앙인사위원회 또는 관련기관장에게 인사교류를 요구할 수 있음.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 	<p>신고자에 대한 전보 우선조치 규정(동일한 다른 직위로 전보 되도록 우선적 고려)</p>			(퀸즈랜드주) 보복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인사 이동 청구권	
고롭힘 구제	X	O	O	O	O	X
	법령이 아닌 신고자 보호지침에서 집단 따돌림이나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를 근무조건상의 차별로 인정하여 금지/구제대상으로 규정	부정주장법에 명시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 금지(고롭힘, 금전적 벌금, 연공서열의 변경, 정직 또는 해고, 중요한 업무의 거부 또는 강등, 고용편익 지급의 거부, 기타 불이익을 주는 조치)		
배척 조항 무효 ³⁴⁾	X	X	O	X	X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대상이 되는 신고를 금지시키려는 취지의 계약상의 모든 규정은 그 효력이 없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되는 모든 계약에 적용, 법에 의한 소송/계 			

V. 부 록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악위반에 대한 소송의 개시 또는 소송 계속을 제지하는 계약도 포함			
입증 책임	O	O	X	O	X	X
	불이익처분 :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당하여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는 경우 불이익처분청 등에 입증 책임 부담	사용자(고용주)가 입증책임을 부담 ⁽³⁵⁾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고자에게 징계 등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이 아님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가 없을 경우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으로 간주됨		
5-3 신변 보호	신변 보호	O	X	X	X	X
	-신고자,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 요구 -경찰서, 관할경찰서의 상급기관인 경찰청 또는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					
6. 벌칙	불이익 행위자 처벌	O	O	X	O	X
	〈장계요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한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출석요구, 진술서 제출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의 없이 위원회	〈내부고발자 보호법〉 -파면, 강등, 5년 이내의 공직임용제한, 정직, 견책 또는 1,000달러 이내의 민사벌금 부과(징계와 벌금은 병과 가능-2012 개정) : ① 금지된 인사처분을 한자, ② 신고대상 위반행위를 한자, ③ 실적보호 제도위원회의 명령	〈즉심에서 10,000달러를 넘지 않는 벌금형〉 -현행법이나 특별한 신뢰관계를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보복적 징계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보복적 징계조치를 한 경우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나는 방법으로 신고사실이나 신고내용을 공개한 경우	〈원즈랜드〉 -보복행위를 범죄로 인정하여 형벌에 처할 수 있음(공무원 이외의 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보복을 행하는 자는 그로 인한 신고자의 손해를 배상 -신고자의 신분 등 비공개대상 정보누설시 처벌 -허위/부정한 신고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신고 청구 지정	<p>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기 관장에 대해 (형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자에 보복행위 등을 가한 기관장 이 위원회의 조치 요구 불이행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 의 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성실의무 위반시 형법상 무고죄 등 으로 처벌 	<p>을 고의로 이행하 지 않은 자 〈부정주장법〉 위법별적 벌금 : 정 부가 입은 손해의 3 배에 해당하는 금액 에 5천~만달러 금 액을 추가한 민사 벌 금 부과</p> <p>〈SO 기업 개혁 법 (Sarbanes-Oxley Corporate Reform Act, 200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고발자의 불법 적 보복은 10년 이 하의 형사처벌 -내부고발 관련 조 항위반시 벌금 			<p>는 범죄로 간주하 여 처벌 (형사소추에 의해 2 년 이하 징역형)</p>	
7. 보상	불이익 보상	O	O	O	O	X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보상금에 원 상회복 소요 비용 을 포함할 수 있음 -별도의 소송제기는 인정하지 아니함 <p>〈부정주장법〉</p> <p>신고로 인한 차별대 우의 경우 원상회복 을 위하여 필요한 모 든 구제를 받음</p> <p>-2배의 금전 배상 및 그 금전에 대한 이자</p> <p>-차별로 인하여 입 은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p> <p>-소송비용 및 합리 적인 변호사비용</p> <p>〈민권세금경감 법,Civil Right Tax Relief Act, 20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고발자 보호법 -전보적 손해배상 (이자, 전문감정비 용, 기타 비용 등 포함)³⁶⁾ <p>〈부정주장법〉</p> <p>신고로 인한 차별대 우의 경우 원상회복 을 위하여 필요한 모 든 구제를 받음</p> <p>-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상한규정 없 음) : 소송비용 및 기대되는 금전적 편의의 손실까지 합산하여 결정</p> <p>-부당해고에 대한 보상(상한규정 없 음) : 신고로 인한 손실분,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 험, 노조활동 등의 특별보상까지 확대 하여 결정</p> <p>:법원은 사용자가 법 원의 재임용 명령 불이행시 추가적 보 상을 명령해야 함</p> <p>*신고자가 불이익조 치에 일정부분 기 여했거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될</p>		<p>별도 규정 없음(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 상)</p>	

V. 부 록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내부고발자의 변호 사비용에 대한 세 금의 두배를 면제	경우 보상 총액은 감액			
신고 보상 제도 (경제적 인센 티브)	O	O	X	X	X	X
	<p>-보상금 : 신고로 인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등이 있는 경우 또는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원상회복 비용 포함, 최대20억, 환수금액의 4~20%)</p> <p>-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익증진 등이 있는 경우 또는 금품수수 자진 신고의 경우</p> <p>*감사, 수사, 조사업무 종사중 또는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산 신고의 경우 보상금 부지급</p> <p>〈월가개혁 및 소비자 보호 법 (Dodd - 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2010) 〉</p> <p>-민간부문의 행정과 및 시정절차 해행위와 관련 담당 정부기관에 제보—대외적 신고</p> <p>-상품거래법 제정 및 절차를 거쳐 권리법 위반행위</p>	<p>〈부정주장법^[37]〉 퀴엠^[38] 소송</p> <p>-정부와의 계약에서 민간기업의 부정에 대해 내부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 승소하는 경우 기여한 정도에 따라 그 금액의 일부(15~30%)를 정부가 보상금으로 지급)</p> <p>-만일 정부가 제보된 사건을 타당한 것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제보자 스스로 사건을 조사하여 고소고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수/절약된 금액의 25~30%를 보상받음</p> <p>-자진신고의 경우 감액 지급되나, 형사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보상금 미지급</p>				
신고 절차 제한	X	X	O	X	X	X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신고 청구 지정	0	0	0	0	0	X
		<p>신고를 통한 환수 금액이 1백만 달러 를 초과할 경우 신 고자에게 10~ 30%의 보상금을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상금 지급 결정 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연방고 등법원에 이의제기 -상품선물거래위원 회 소비자보호기금 및 증권거래위원회 투자자보호기금을 통해 재원 확보 				
8. 기타	최근 동향	<p>〈미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원의 판례에 의한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의 발전³⁹⁾ : 공공정책적 예외(public policy exception)의 인정으로 민간부문 근로자의 불법행위 신고까지 보호 -민간기업 내부고발자까지 보호 확대⁴⁰⁾(Sarbanes-Oxley Corporate Reform Act, 2002) -공공부문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의 지속적 강화 추세⁴¹⁾ : Fedeeral Employee Protection of Disclosures Act(2004), 공고및연방공무원반차별·반보복법(Notification and Federal Employee Anti-discrimination and Rehabilitation Act, 일명 NO FEAR Act, 2002) 등 -모든 형태의 위반에 대해 의회의 감독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발전⁴²⁾ -비영리민간기구인 전국공익제보자센터(National Whistleblowers Center,NWC)가 활발한 활동⁴³⁾ : 원자력 관련 비리, 국가정보기구의 문제점 등이 시정됨 				
	기타 제도 도입 국가	<p>〈개별국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뉴질랜드 공개정보보호법(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 공사부문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개정보보호법(Protected Disclosures Act, 2000) -네덜란드 : 최근 보호법 제정 -아일랜드 -독일 :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에서 증인보호규정, 비밀보장수락, 카르텔관청의 보너스 제도 등 규정 *카르텔 관청의 보너스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연방 카르텔관청은 기업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카르텔 협약에 참가했거나, 참가기업 내부의 비리를 제보했을 때 과태료를 면제해주는 보너스제도를 시행(공정경쟁거래법, 질서위원회법) : 관계 행정관청에서의 조사가 착수되기 전 카르텔 문제를 밝히는데 중요한 정보와 증거자료를 제일 먼저 제공한 사람에 게만 벌금을 면제해 주는데, 카르텔 협약의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해주지 않고 있음. 				

V. 부 록

〈외국의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비교 (2013.5.9 수정)〉

구 분	한 국	미 국	영 국	캐나다	호 주	일 본
신고 창구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⁴⁴⁾ : 내부공익신고자보호법 형태는 아니나 법적 보호는 제공(돈세탁, 아동추행의 경우 외부에 대한 제보 규정 등) ※ 대륙법계 국가는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 시민단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제도의 도입을 추진중 최근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대 : (사례) 네덜란드인 내부고발자 Paul van Buitenan가 유럽의회의 네덜란드 대표로 선출 <p>〈국제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부패방지협약(2003체결, 2005발효), EU결정(2002. 4), 중남미 반부패 협정 - EU결의안 1729⁴⁵⁾(Assembly in its Resolution 1729, 2010) : EU의회로 하여금 내부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작성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의 입법사항을 검토하도록 요청 - 국제표준화기구(ISO)의 ISO 26000 사회적 책임 가이던스⁴⁶⁾('10. 11. 1) : 공익신고자 보호관련 사항 규정 					
주요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 최대 제약업체인 미국 화이자의 13개 제품에 대한 불법 판촉행위를 제보한 6명의 신고자에게 역대 최대인 총 1억 200만달러의 보상금 지급('09.9월) *화이자는 23억달러의 벌금 부과조치(부정주장법에 따른 환수 및 보상금 지급) ◆ 영국, Royal Cornwall Hospital Trust의 비리를 제보하여 해고된 John Watkinson에게 £1,200,000의 신고보상금과 해고때문에 받지 못했던 급여 £67,250를 지급하도록 결정('10.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보상에도 불구하고 공익제보를 했던 윗킨슨은 '35년간의 직장생활을 잃은 것과 12년간 은퇴 후 겪은 일들에 대하여 보상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함(The Telegraph, 29 Aug 2010)⁴⁷⁾ ◆ 미국, 증권사기 증거를 제공한 내부신고자에게 5만달러의 보상금 지급 ('12.8월) *월가개혁 및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첫 보상금 지급사례 ◆ 미국 세무당국은 스위스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불법적 해외예금도피를 한 사람들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아 회수한 세금과 벌금 등의 일정 비율을 UBS은행의 내부고발자 Bradley Birkenfeld에게 1억 4백만 달러를 보상('12.9.11)⁴⁸⁾ ◆ 1996~2005년 미국은 내부고발자의 도움을 받아 주 또는 연방 정부를 속인 의료업자들로부터 최소 93억 달러의 돈을 환수하였음⁴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처: 내과학 회보(Annals of Internal Medicine), 미국 보스턴 소재 브리검 부인병원의 아론 캐셀하임과 호주 멜버른대학의 데이비드 스튜어트가 미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미 법무부는 1990년대부터 의료사기 사건에 내부고발자들을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내부고발자들의 신고로 시작된 소송이 미 법무부 의료사기 관련 소송의 90% 이상을 차지 • 내부고발자들은 정부 환수금 중 15~25%를 포상금으로 받음 - 1996~2005년 미 당국이 되찾은 93억 달러 가운데 내부고발자들이 포상금으로 받은 돈은 10억 달러가 넘음 - 최근 제약업체들 비리가 속속 드러나면서 정부 환수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당 환수금: 2002년 1천만 달러 → 2005년 5천만 달러 - 미국 상공회의소 법률개혁협회의 매튜 웹 부회장은 이번 연구결과는 내부고발자를 이용한 현 시스템이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 					

14) 출처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3.4, 국민권익위원회)

15) 출처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방안' (2006, 국가청렴위원회)

16) 출처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3.4, 국민권익위원회)

- 17) 출처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3.4, 국민권익위원회)
- 18) 출처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3.4, 국민권익위원회)
- 19) 출처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3.4, 국민권익위원회)
- 20) 출처 :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2002, 부패방지위원회)
- 21) 출처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3.4, 국민권익위원회)
- 22) 출처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3.4, 국민권익위원회)
- 23) 출처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3.4, 국민권익위원회)
- 24) 출처 :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2002, 부패방지위원회)
- 25) 출처 :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2002, 부패방지위원회)
- 26) 출처 :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2002, 부패방지위원회)
- 27) 출처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3.4, 국민권익위원회)
- 28) 출처 :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2002, 부패방지위원회)
- 29) 출처 :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2002, 부패방지위원회)
- 30) 출처 :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2002, 부패방지위원회)
- 31) 명령적 구제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행정적 명령을 통해 공익신고자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에 대해 우선적 보호를 제공하는 사전적 구제절차임.
- 32) 출처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3.4, 국민권익위원회)
- 33) 출처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3.4, 국민권익위원회)
- 34) 내부고발자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신고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와 보호절차의 임의적 면제 금지 규정. 즉, 신고자의 권리와 보호절차는 내부고발자보호법에 의한 소송이나 합의가 아닌 계약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는 면제되지 않는다는 명시규정.
- 35) 출처 : '각국의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보상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2002, 부패방지위원회)
- 36) 출처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2013.4, 국민권익위원회)
- 37) 부정주장법에 의한 국고 환수금액(단위:건, 백만달러)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처리건수	457	396	379	426	538	511	455	494	540	565	712
환수금액	1,210	1,344	1,104	1,545	570	1,157	1,512	1,487	1,046	1,991	2,454
보상금액	184	218	166	339	112	171	225	191	202	259	386

- 38) 퀴템(qui tam)은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왕과 자신을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임.
- 39) 출처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방안' (2006, 국가청렴위원회)
- 40) 출처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방안' (2006, 국가청렴위원회)
- 41) 출처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방안' (2006, 국가청렴위원회)
- 42) 출처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방안' (2006, 국가청렴위원회)
- 43) 출처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방안(2012.9.20) 자료
- 44) 출처 :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강화 방안' (2006, 국가청렴위원회)
- 45) 출처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방안(2012.9.20) 자료
- 46) 출처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방안(2012.9.20) 자료
- 47) 출처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방안(2012.9.20) 자료
- 48) 출처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성과와 발전방안(2012.9.20) 자료
- 49) 출처 : 국제협력 및 해외 반부패 동향(2008. 10., 국민권익위원회)

국토교통부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시행 2013.4.16] [국토교통부훈령 제67호, 2013.4.16,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감사담당관), 044-201-3120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공익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및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열거된 행동기준에 위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공직자”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국토교통부 소속 모든 직원을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직자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자신이 부패행위를 한 경우
 - 나. 부패행위를 강요 · 제의 받은 경우
 - 다.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4. “자진신고”란 공직자가 스스로 자신의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무)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제4조(신고의 방법)**
- ① 내부신고를 하려는 공직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문서, 전화, 우편, 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 및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등 긴급한 경우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처리) ① 감사관은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관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신변보호) ① 내부신고의 접수·조사·통지·포상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감사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신분보장)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소속기관이나 다른 공직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신분보장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감사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협조자의 보호) 이 규정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협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보호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신고내용이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감사관은 감사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책임의 감면 등) ① 내부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부패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자진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징계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다.

V. 부 록

② 내부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신고심사위원회) ① 제10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른 책임의 감면, 포상금 지급 및 인사상 우대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내에 신고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위원은 국토교통부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하며, 감사담당관이 간사가 되어 심의를 보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항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구성·개최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관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부신고를 통해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감사처분 등이 있는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한 공직자의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 접수순서 및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 감사관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별도로 신고자의 희망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 우대조치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등 평정시 우대
2. 희망부서 전보 및 보직
3. 우수·모범공무원 등 표창 추천

제13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로 신고된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2. 이미 신고 또는 인지되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으로서 새로운 입증자료나 증거의 제출이 없는 경우
3. 신고 전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4. 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결한 경우
5.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6. 본인의 부패행위를 자진신고한 경우

7.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4조(포상금의 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

부칙 <제67호, 2013.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행위 내부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1.9.1] [고용노동부훈령 제45호, 2011.8.19, 제정]

고용노동부(감사관), 02-6922-0814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의 부패행위에 대하여 내부 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동강령”이란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제2장,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3. “내부공익신고”(이하 “내부신고”라 한다)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 행위를 강요·제의 받은 경우
 - 나. 다른 공무원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신고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 제5조(부패행위 신고센터의 설치 등)
- ① 내부신고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실에 “부패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감사담당관이 책임관이 된다.
 - ② 감사담당관은 실무처리에 필요한 사람을 담당자로 지정하여 내부신고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신고 업무의 일부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방법) ①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문서·전화·우편·인터넷, 그 밖에 편

리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내부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인적사항, 신고대상·취지 및 육하원칙에 따른 경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폐행위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중인 부폐행위 등 긴급한 경우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의 처리) ① 감사담당관은 제6조의 내부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내부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재한 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 부폐행위 신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신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사담당관은 신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신고자가 상담을 원하면 비밀이 유지되는 장소에서 신고자와 상담할 수 있다.
- ③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접수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보완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 중 공무원의 부폐행위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
- ⑥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조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같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 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감사담당관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 부폐행위가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부폐행위자 및 부폐행위 사항에 대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

V. 부 록

제8조(비밀보장) ① 내부신고의 접수 · 조사 · 통지 · 진술 등 처리와 관련된 공무원은 신고자의 동의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관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분보장) ① 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 · 진술 ·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 기관이나 다른 공무원 등으로부터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은 이 훈령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 전직 · 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관은 징계권자에게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한 경우에는 인사권자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 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감사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요구사항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자 보호) 이 훈령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보호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3.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자 외의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훈령에 따른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포상 실시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내부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확인된 부패행위자에 대해 공소제기 · 기소유예 · 기소 중지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2. 이 훈령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 · 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담당관실 또는 외부기관 등에서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2.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3.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4. 감사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감사담당관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가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이 밝혀진 때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교육) 고용노동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내부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직자에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신규 임용자에게는 임용 후 1주일 이내에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45호, 2011.8.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2011. 9.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적용) 이 훈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3.8.1] [서울특별시조례 제5526호, 2013.8.1., 제정]

고용노동부(감사관), 02-6922-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공익제보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서울특별시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제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의 사무와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의 공익 신고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상의 부패 신고를 통칭한다.
2. “공익제보 조사”란 시가 접수하거나 관계 기관에서 이첩 받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를 말한다.
3. “공익제보자”란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익제보를 한 자를 말한다.
4. “공익제보자 등”이란 공익제보자와 공익제보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5. “불이익 조치”란 다음 각 목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6.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를 도입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7.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민 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이 시에 신청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업 또는 사무에 대하여 공익상 또는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공익침해행위와 부패행위, 여타 위법 행위에 거부하고 대항하는 공익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② 시민은 스스로가 공정하고 부패없는 맑은 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반부패 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시의 공익제보 시책에 참여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한 공익제보 조사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 기관과 소재 기업 등의 책무) 시가 관할하는 기관과 시에 소재한 기업, 단체, 법인 등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 등 여러 위법 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제보 지원위원회) ①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공익제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익제보 조사에 대한 심의자문
2.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 지원 심의
3. 제10조에 따른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 사항의 권고와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심의
4.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과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V. 부 록

5.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공공기관,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7.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사항
 9.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직자에 대한 표창
 10. 그 밖에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되, 과반수는 외부 인사 중 민간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 호선한다. 시 감사관은 당연직으로서 부위원장으로 한다.
- ③ 외부 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관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1.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제보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거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공익제보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공익제보 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공익제보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여 시의회가 추천하는 2명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련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로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서 임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 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공익제보의 접수 등) ① 시민은 누구든지 시와 관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제보할 수 있다. 다만, 시민단체를 통해 공익제보한 경우에도 달리 차별하지 아니한다.

1. 위법행위와 관계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2. 시
3. 시의원
4. 위원회

② 공익제보를 하려는 시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제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다만 익명을 원할 때에는 변호사가 이를 대리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시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변호사와 논의하여야 한다.

2. 위법 행위를 하는 자

3. 공익제보 내용

4. 공익제보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서에 공익제보자가 밀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제보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제보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제보자의 보호 등)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와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공익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제보자 등의 개인정보나 신고 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으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제보자 지원 등) ①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시장에게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육체적 · 정신적 치료를 위하여 진찰 · 입원 · 투약 · 수술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 · 파견근무 · 신변보호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3. 원상회복 관련 쟁송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 노무사 등의 수임료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산정 기준은 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

안의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이하 “월평균액”이라 한다). 다만, 월평균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월평균액이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제보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인정하는 금액(제2조 제5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시에 대한 경우만 적용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익제보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거나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여타 법률 구제로서 구조금을 지급 받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시는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시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한다.
 - ⑥ 시장은 공익제보자 지원을 위해 위원회의 권고가 있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등이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받았을 경우 월평균액의 지급. 다만, 월평균액은 평균임금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하며, 지급 산정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공익제보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제11조(보상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시 재정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시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2.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 · 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 · 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3.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판결
 - 가. 지방세의 부과
 - 나.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 다.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령의

[별표 2] 보상금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④ 위법행위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진 자 또는 공직자 등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시의 수입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⑦ 시장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보상금 지급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보상금 지급 신청인, 참고인 또는 관계 기관 등은 위원회로부터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보상금 지급 신청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보상금 및 구조금의 중복 지급 금지 등) 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신청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제보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신청 사실이 발생하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은 경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을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이 조례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 또는 구조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또는 구조금 등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제보센터의 설치 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익제보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제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위하여 전담하는 팀을 두어 공익제보센터의 업무를

V. 부 록

수행토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 · 우편 · 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시에 접수된 공익제보의 통합 처리
2. 각 기관, 단체, 기업으로부터 송부 이첩된 제보 사항의 분석 처리
3. 공익제보자 보호 지원을 위한 사무 처리
 - ③ 공익제보센터는 제보가 접수 또는 이첩되는 즉시, 해당 사안을 분석하여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조사 여부를 10일 이내에 통지한다.
 - ④ 시가 지도 · 감독 · 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조사 조치하며, 내용이 타당 하나 시의 사무와 관계 없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조사 의견을 첨부하여 이첩하고 그 처리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의 사무와 관계 있음에도 기각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담당관’이라 한다)의 결재를 통하여 담당관은 월별로 각 사항에 대한 관계 서류 모두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⑤ 조사 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접수 후 보호 및 지원조치가 필요한 경우,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신고 접수 현황에 대해 시장은 월별로, 위원회와 시의회는 분기별로 보고받아야 하고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 선정) ①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환경조성사업(이하 “환경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환경조성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5조(공익제보자 보호 우수 기업의 지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1.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정관 명시
2. 공익제보자 보호 규정의 공개된 장소 비치
3. 1년에 2회 이상 이사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사항 보고
4. 등기이사로서 공익제보자 보호 관련 업무의 최종책임자 선정
5. 직급별 3인 이상의 공익제보 접수자 선정
6. 접수된 공익제보 자료의 5년 이상 보관
7. 공익제보자의 신고 이후의 조치에 대한 분기별 점검
8. 비정규직 등도 공익제보자 보호 적용대상인지의 여부
9.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년에 2회 이상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 실시
10. 공익제보 접수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정기교육 실시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 단체 · 기타 법인 등이 공익 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운영
2. 지역 내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 등의 홍보 지원

제17조(우선구매 등 지원) 시장은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공익제보자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지급의 특례) 시장은 환경조성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표창의 수여)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20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제보자 보호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공익제보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22조(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장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민원사무는 다른 민원사무에 우선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526호, 2013.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12. 2. 7] [법률 제11327호, 2012.2.17,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권익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2.3)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2.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 나. 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4. “부패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10. 17] [대통령령 제23231호, 2011.10.17,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1.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
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기준 등 행정기관등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
3. 불합리한 행정제도·법령·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
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요구

제3조(기업 윤리경영 지원 등)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기업의 기업윤리 확립의무가 효과적으로 달성 될 수 있도록 윤리경영 지원 및 협력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제4조(공직자 행동강령) 위원회는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가 법 제8조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의 개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 및 법 제80조에 따라 고충민원의 신속한 해결, 행정제도의 개선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참여포털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권익구제기관이나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2 장 국민권익위원회

제6조(권익보호 및 부패방지 정책의 수립) ① 위원회는 국민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혹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5.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의 고충민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6. “신청인”이란 이 법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 7.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 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책무) ① 공공기관은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②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소속 직원과 국민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당의 책무) ① 「정당법」에 따라 등록된 정당과 소속 당원은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당 및 소속 당원은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게 하고 정당운영 및 정치자금의 모집과 사용을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의 의무) 기업은 건전한 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확립하고 일체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권리보호·권익구제 및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세부추진사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평가) 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실태조사·평가를 외부전문가 또는 외부전문기관에 자료의 분석 등을 의뢰하거나 위원회 및 관계기관의 공직자 등으로 평가 작업반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권익구제 및 부패방지 교육)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단체 또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그 교육내용에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등)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행동강령의 시행·운영을 위하여 행동강령 운영지침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기관별 행동강령의 시행·운영 및 이행실태를 조사·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 ① 위원회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 위반행위가 확인된 공직자가 징계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의 임면권자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 또는 임면권자는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법 제12조 제16호에 따른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및 상담 업무를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분석·관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 등이 전화로 처리하는 민원안내 및 상담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기술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그 활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를 경유한 소관

V. 부 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국민의 의무) 모든 국민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09.1.7]

제8조(공직자 행동강령) ① 제7조에 따라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다.

1. 직무관련자로부터의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공직자가 제1항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및 효력 등은 당해 공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징계관련 사항을 규정한 법령 또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공직자의 생활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보수와 처우의 향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권익구제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거나 사회정의와 공익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등 행정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2 장 국민권익위원회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사항의 접수 및 안내 등 일부 사무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에 따라民間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참여 포털"이라 한다)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참여포털 홈페이지 및 시스템의 운영·관리
 2.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류 및 재분류
 3. 참여포털에 접수된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의 분석·평가 및 처리결과의 사후관리
 4. 참여포털의 운영과 관련한 교육·홍보
 5.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한 기준 마련
 6. 그 밖에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③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및 국민제안 등의 신청·접수·분류·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정책참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관계 행정기관등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④ 관계 행정기관들은 참여포털에 접수되는 민원, 국민제안 및 정책참여 등에 대하여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공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정보통신망의 연계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위원의 겸직금지) 법 제17조제2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교육·연구기관 및 학술단체를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3.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15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피를 신청하려는 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할 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10.25>

1. 국민의 권리보호 · 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을 유발하는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사책 및 제도개선 사항의 수립 · 권고와 이를 위한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6.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 평가
7.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 교육 · 홍보 계획의 수립 · 시행
8. 비영리 민간단체의 부패방지활동 지원 등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협력
10. 부패행위 신고 안내 · 상담 및 접수 등
11.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
12. 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13. 부패방지 및 권익구제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 관리 및 분석
14. 공직자 행동강령의 시행 · 운영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
1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 상담 및 민원사항 처리실태 확인 · 지도
16.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과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설치 · 운영
1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협력 · 지원 및 교육
18. 다수인 관련 갈등 사항에 대한 중재 · 조정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고충민원의 조사 · 처리
19. 「행정심판법」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0.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21. 그 밖에 국민권익 향상을 위하여 국무총리가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각각 고충민원, 부패방지 업무 및 중앙행정 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로 분장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 ② 기피시유는 기피를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③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자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위원이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위원회 의결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개정 2011.10.17>

1. 위원회의 주요정책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3.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4. 법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6.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7. 부패방지 또는 부파행위 신고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8.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사항 등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소위원회)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한 고충민원(법 제2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외한다)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5.28>

1. 행정 · 교육 · 문화 · 복지 · 노동 · 교통 및 도로 등 일반 행정 및 사회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2. 세무 · 농림 · 수산 · 환경 및 재정 등 경제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3. 주택 · 건축 및 도시계획 등 건설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4. 국방 · 병무 · 보훈관련분야의 고충민원(현역장병 및 군 관련 의무복무자 등이 제기하는 고충민원을 포함한다)
5. 경찰기관(해양경찰기관을 포함한다)의 처분 · 수사 등 경찰관련 분야의 고충민원
- ②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각 소위원회의 구성위원에게 특정사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제척 · 기피 · 회피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다른 소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하도록 하거나, 해당 사안에 한하여 다른 소위원회의 위원을 그

V. 부 록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25)

② 위원장, 부위원장과 위원은 고충민원과 부파방지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8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그 직에 4년 이상 있었던 자
6.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상임이 아닌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상임이 아닌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2.17)
-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위원이 결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14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제16조(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다수인 관련 민원) 법 제20조제1항제1호에서 “다수 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안을 말한다.

1. 다수인이 관련된 사안 중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공익 또는 국가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안
2. 다수의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이해관계나 처리절차가 복잡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한 사안
3.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신청인의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큰 사안

제1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21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구성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구성위원을 변경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 조사·연구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회의의 공개 등) ①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방·안보 또는 수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과정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외의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조(사무처 직원의 선별)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부파방지업무 및 행정심판업무의 수행 등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청렴성·도덕성을 갖춘 자를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으로 임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
3.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면직 또는 해촉한다.

제17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행정기관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회의 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제18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 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제정·운용할 수 있다.

제22조(위원회 행동강령 등) ① 위원회는 위원,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행동강령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전문위원 및 소속직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고충민원 처리와 부패방지업무, 행정심판업무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기구) ①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은 복지, 산업, 건축, 도시, 도로, 군사, 경찰, 노동, 환경, 민·형사 등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라 자문기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정책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고충민원의 처리와 제도개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3. 부패방지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 또는 소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전문상담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민원업무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세무사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전문상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25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
2. 법 제24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3. 법 제25조에 따라 파견된 직원
4. 법 제29조제1항제2호,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인·참고인·감정인 또는 관계 공직자
5. 제24조에 따른 전문상담위원
6. 제31조에 따른 자문기구의 자문위원
7. 제74조에 따른 보상위원회 위원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자(공무원은 제외한다)로서 위원회에 출석한 자

제26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21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V. 부 록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1.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 중 다수인의 이해와 관련된 사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
 3. 제51조에 따른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소위원회가 위원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22조(전문위원)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학계, 사회단체 그 밖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제23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겸직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처우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6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위원회는 매년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상황을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6급 이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은 공무원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직원은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3. 소관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
 4. 업무처리에 있어서 책임감과 능력이 있고 친절·성실한 자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자
-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기관의 장은 파견후 복귀한 자에 대하여 보직부여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파견직원이 위원회에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평정시 우대할 수 있다.
- 제27조(파견직원의 인사 등) 위원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직급·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업무 및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제28조(운영상황) 법 제26조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
 2.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한 사항
 3. 고충민원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이 수용하지 아니한 사항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9조(부파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도개선에 관한 위원회의 의견 및 조치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제1항에 따른 제도개선 조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제도개선에 관한 재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재심의의 결과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그 결과가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30조(부파유발요인의 검토) ① 위원회는 법 제28조에 따라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과 국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점검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제도개선의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이를 재심의 하여야 한다.

제28조(법령 등에 대한 부패유발요인 검토)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유발요인 검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 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조치는 제12조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검토(이하 "부패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부패유발의 가능성

가.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여부

나. 법령 등의 적용기준 및 권한행사의 절차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다.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적정수준의 부패통제장치가 존재하는지 여부

2. 법령등 준수의 용이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이 준수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나. 법령등의 위반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다. 특혜 유발의 가능성 및 수혜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가.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에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관련정보가 충분히 공개되도록 여부

나. 준비사항·처리절차·처리기간 및 처리결과 등이 예측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부패유발 가능성의 존재 여부

②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평가 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및 평가계획 등에 관한 부패영향 평가지침을 수립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법령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자료 등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부패요인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대로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치기한 내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개정하고자 하는 법령등이 부패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패영향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 부 록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그쳐야 하며 공공 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실태조사 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 및 위원회에 파견되거나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별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 파견받은 직원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별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3 장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 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 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제1항에 따른 부파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부파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 법 제2조제1호 라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사규 정관 등 내부규정(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사규정관 등 내부 규정을 포함한다)에 대한 부파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부파영향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부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직유관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부파영향평가 자문기구) ① 위원회는 부파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파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부파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부파영향평가에 관한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부파영향평가 결과의 관계기관 통보) ① 위원회는 부파 영향평가의 결과가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에 따른 규제영향 분석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 규제심사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부파영향평가의 결과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1조 및 제24조에 따른 법령안의 심사와 법령의 정비·개선에 참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제처에 통보하여 법 제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공공기관의 설명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그 목적·일시·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조사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4조(이해관계인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29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출석일 전일 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 ·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 · 세무사 · 공인회계사 · 기술사 · 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31조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 4 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리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 3 장 고충민원의 처리

제35조(고충민원의 신청) ① 법 제39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술로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명칭
2.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의 신청 유무
3. 다른 권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권리 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 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
5.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6. 군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교정시설경비교도 · 전투경찰 순경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한 다인)자가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인의 소속 · 계급 및 군번

제36조(고충민원의 선정대표자) 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권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권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의 허가) ① 신청인이 법 제39조제3항제5호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권리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 ② 권리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V. 부 록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 ④ 권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리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0조(고충민원의 이첩 등)** ① 권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 중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를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권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권리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권리위원회에 이첩한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첩받은 고충민원은 이첩된 때에 권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 ③ 권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첩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 ④ 신청인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하여 동일한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각 권리위원회는 자체 없이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리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관계 행정기관등의 정정 등) 권리위원회는 신청인이 관계 행정기관등을 잘못 지정하거나 관계 행정기관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관계 행정기관등을 정정하거나 추가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9조(신청서의 보완) ① 권리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권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권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 할 수 있다.

제4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권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41조(행정심판 등의 통보)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구제절차에 따라 접수된 민원사안이 법 제41조에 따라 권리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과 동일한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권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권리위원회는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권리위원회에서 이미 처리된 사안인 경우에는 그 사안을 처리한 권리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고충민원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권리위원회는 해당 고충민원이 접수된 권리위원회에 해당 고충민원의 처리결과 및 처리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42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① 권리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권리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43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① 권리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권리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자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각하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44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 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의 의뢰는 감정인 또는 감정기관, 감정기간, 감정의 목적 및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5조(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①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일시와 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를 받은 당사자가 속한 소속 기관의 장은 당해 당사자에 대하여 출장 또는 공기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46조(소속 직원의 실지조사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사항이나 마약과 관련된 범죄 등 중대한 범죄의 수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등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의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를 동반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
2. 관계 행정기관등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47조(합의의 권리 및 조정 절차) ① 법 제44조에 따른 합의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

② 권익위원회는 법 제45조에 따른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V. 부 록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 · 결정 · 재결 · 화해 · 조정 ·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각하 또는 이송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회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 ·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 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 민원을 조사 ·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최할 수 있다.

- ③ 조정회의는 권익위원회 위원장 또는 권익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
- ④ 권익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 민원의 신청인과 책임 있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 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 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고충민원의 내용
 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법 제47조에 따른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 제도 ·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3. 관계 행정기관등의 회신기한 등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9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권익위원회는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관계 행정기관등 ·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 제50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등)** ① 권익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과 처리담당자의 소속 · 성명 · 연락처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 · 전신 · 모사전송 ·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1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권익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 할 수 있다.

제53조(공표) 권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
2. 제50조제1항에 따른 처리결과
3. 제50조제2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불이행사유

제54조(권익위원회 상호간의 관계) ① 위원회 또는 각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상호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상호 협의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패행위 등의 신고 및 신고자 등 보호

제55조(부패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7조(신고자의 성실의무)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① 권익위원회는 법 제52조에 따른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 서류의 제출
 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
 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
 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 ②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 지원) 위원회는 법 제5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한다.

1.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활동
2. 권익위원회 전국협의회의 구성 등 권익위원회간의 연계·교류를 위한 활동
3.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와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육 지원

제4장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등의 보호

제54조(신고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55조(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한 확인)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에 따른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취지 및 이유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위원회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고소·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신고자가 위원회의 처리 및 조사기관의 검사·수사 또는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의 여부
- ② 위원회는 제1항제7호에 따라 신분공개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관의 처리절차 및 신분공개의

V. 부 록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58조(신고의 방법)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신고의 처리) ①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성에 필요한 사항

2. 신고내용이 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의뢰한다. 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에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이 포함된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④ 위원회에 신고가 접수된 당해 부패행위의 혐의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로서 부패혐의의 내용이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명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여야 한다.

1.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2.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3.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4. 법관 및 검사

5. 장관급 장교

6. 국회의원

⑤ 제4항에 따라 고발한 경우 검찰은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위원회는 접수된 신고사항을 그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0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59조에 따라 신고를 이첩받은 조사기관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감사·수사 또는 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56조(신고의 보완) 위원회는 신고자가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시정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57조(신고사항의 이첩 등) ① 위원회는 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첩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감사원

2.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사기관

3. 그 밖에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감독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 조사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상호 협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이첩하는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이첩 등의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경우

2. 제56조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은 신고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반복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고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신고자에 대한 확인결과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신고사항을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아니하고 종결한 때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제2항의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2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위원회에 대하여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1조(재정신청) ① 제5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혐의대상자의 부파형의가 「형법」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어 위원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한 경우, 그 고발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이미 수사 중에 있거나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사건 또는 그 사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위원회가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위원회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제26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1조, 제262조, 제262조의4, 제264조 및 제264조의2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검사가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그 때, 제59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수사의뢰한 때에는 수사의뢰한 날부터 3개월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개월이 경과한 때 각각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62조(신분보장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 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전직·징계의 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하여야 한다.

제59조(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 ① 위원회는 법 제55조에 따른 부파행위의 신고사항이 제57조제1항 또는 제58조제1항에 따른 이첩 또는 종결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신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자에게 자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고, 위원회는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당 공공기관은 위원회에서 송부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부파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61조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조사기관 및 해당 공공기관의 처리) ① 조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61조(조사결과 등의 통보) ①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라 조사기관이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위원회로부터 직접 이첩 받은 기관이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3.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 ② 법 제59조제5항에 따른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62조(조사결과의 처리) ①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V. 부 록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③ 누구든지 신고로 인하여 인·허가 등의 취소, 계약의 해지 등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한 때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 또는 시정을 위하여 인·허가, 계약 등의 짐정적인 효력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있다.
1. 요구인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요구
 3. 요구인,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
- ⑥ 제5항 각 호의 요구·조회·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조사결과 요구된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요구자의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 관계 기관의 장 또는 요구자가 소속한 단체·기업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⑧ 공직자인 신고자가 위원회에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의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위원회는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요구를 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⑨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권자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63조(불이익 추정) 신고자가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뒤 제6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원상회복 등을 요구하거나 법원에 원상회복 등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4조(신변보호 등) ① 위원회 및 제59조제3항에 따라 신고 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의 종사자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고자는 신고를 한 이유로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 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재조사의 요구여부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와 관련된 사항중 이해관계인이 알아야 할 사항이 있거나 관련자의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해당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법 제60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사·수사 또는 조사결과의 요지를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4조(재정신청의 절차 등) ① 위원회는 법 제61조에 따른 재정신청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 등으로부터 재정신청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증거 등을 제출받거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인·허가 및 계약 등의 짐정적 효력유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보장조치등"이라 한다)를 요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인적사항·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 진술청취, 진술서 제출요구, 자료 등의 제출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소속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① 위원회는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이 소속된 기관·단체·기업 또는 관련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 대한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구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소속 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신변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 한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상력)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누구든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부파 행위신고자 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부파 행위신고자 등임을 이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협조자 보호) 이 법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62조, 제64조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제66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67조(준용규정) 제62조부터 제66조까지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준용한다.

1.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에 부파행위를 신고한 경우
2. 피신고자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파행위를 신고한 경우
3.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제68조(포상 및 보상)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부파행위의 신고자는 이 법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서면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 요구인의 신분보장 조치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조치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직 등 신분보장조치등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한 때에는 이를 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인에게 자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회로부터 제6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로부터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요구받은 기관의 장이 당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소명하여야 한다.

③ 법 제62조제8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전직·전출·전입 또는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받은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관련 기관의 장은 그 조치결과를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구내용에 따른 조치를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① 위원회는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신고자 또는 신고자의 친족·동거인의 인적사항 등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거나 공개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고, 법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발하거나 징계권자에게 관련자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0조(신변보호) ① 법 제64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변보호 조치의 요구는 신고자와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요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자체 없이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4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V. 부 록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9조(보상심의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제68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의한 포상금을 받았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은 경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따라 받을 보상금의 액수와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액수가 이 법에 의하여 지급받을 보상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보상금의 액수를 공제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 6 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파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의 사무에 대하여는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또는 감사원장(이하 “당해 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감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부파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③ 신고자 및 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가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해제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장 부파행위 신고자의 포상 및 보상

제71조(포상금의 지급사유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파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통고처분,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 징계처분 및 시정 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부파행위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4. 금품 등을 받아 자진하여 그 금품 등을 신고한 경우
 5.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5.28.)
-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은 신고금액의 20퍼센트 범위로 하되, 2억원 이하로 한다.
- ④ 제77조제2항, 제80조 및 제83조의 규정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사유가 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제72조(보상금의 지급사유) ①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말한다.

1. 물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의 기밀 및 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4조(감사실시의 결정) ① 제7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 청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국민감사 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이 감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기각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5조(감사청구에 의한 감사) ①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감사원 또는 당해 기관의 장은 감사가 종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감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운영)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민감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7 장 보 칙

제77조(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 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발견하거나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다만,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을 제외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③ 법 제6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원상회복 등에 소요된 비용은 치료, 이사 또는 실직·전직 등으로 지출된 비용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3조(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위원회는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자가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제74조(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회 위원장이 「보상위원회」라 한다 1명, 당연직 위원 1명 및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② 보상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 소속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부패방지 및 보상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감정평가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75조(보상위원장)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하고, 보상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보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보상위원장이 지명한 보상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6조(보상위원회의 회의) ① 보상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는 보상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보상금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 그 포상 또는 보상과 관련된 기관의 공직자, 조사기관의 담당자를 보상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상위원회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

V. 부 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에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법률 또는 조례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8조(고충민원사무의 정보보호)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들은 고충민원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9조(고충민원 신청사항의 게시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관계 행정기관들의 장은 고충민원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편리를 비치하는 등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들과의 협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담당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등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0조(관계 행정기관등과의 협조)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1조(교육과 홍보 등) ①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권리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학교에서 고충민원의 처리와 권리구제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교육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공무원의 교육훈련 과정에 고충민원 제도 및 부패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피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퇴직전 소속 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한 부패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의 여부
3.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 ⑤ 보상금의 지급한도액은 20억원으로 하고, 산정된 보상금의 천원 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공직자 보상금의 지급제한) 부패행위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 중이거나 종사하였던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이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9조(보상금 등의 지급결정 등) ① 위원회는 보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상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보상결정서 정본 및 보상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자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제80조(보상신청의 경합시 보상금 결정) ① 동일한 부패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한 경우로서 제5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보상대상 가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 각각의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부패행위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배분한다. 이 경우 제77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신고자별로 감액사유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81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보상금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부과 및 환수 등에 대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절차가 종료된 후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법률관계가 확정된 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시작될 때까지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수입회복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을 초과하는 경우 제79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액에 이를 때까지 초과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3조(취업자의 해임요구) ①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당해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임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82조에 위반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자가 있는 경우 관계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취업자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공공기관의 장은 그 취업자가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4조(국회 등의 특례) 국회·법원·현법재판소·중앙선거 관리위원회 또는 감사원은 당해 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12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8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행정심판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다.
 ②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현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한다.

제 8 장 별 칙

제86조(업무상 비밀이용의 죄) ① 공직자가 제7조의2를 위반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7>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 또는 그 정을 이는 제3자가 제1항의 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

제87조(업무상 비밀누설죄) 제30조에 위반하여 부패방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의 죄) 제64조제5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9조(비위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 제82조제1항에 위반하여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공공기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0조(조치요구에 대한 불이행의 죄)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가 제62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보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3조(보상금의 환수) 위원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하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2.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 6 장 국민감사청구

제84조(감사청구인) 법 제7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란 300명을 말한다.

제85조(감사청구 제외사항) 법 제7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행정심판·소송, 현법재판소의 심판, 현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3.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 또는 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제86조(감사청구의 방법) 법 제72조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및 직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이하 “감사청구서”라 한다)로 하되, 그 중 5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감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제87조(감사청구서의 반려) 감사청구서를 접수한 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감사청구서가 동일 기관에 2건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경우에는 나중에 접수된 감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 7 장 보 칙

제88조(고충민원 관련 제도개선에 대한 제안 등의 방법) 법 제77조에 따른 제도개선 제안에 관한 의견제출과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개선 대상 제도나 법률 또는 조례의 현황과 문제점
2. 합리적 제도개선을 위한 제안의 내용

V. 부 록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9.1.7>

1. 제62조제1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
2. 제62조제6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요구·조회 및 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2조제7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원회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62조제1항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한 자를 제외한다)
-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42조에 따른 업무수행을 방해·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고의로 지연시킨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 ④ 삭제 <2009.1.7>
- ⑤ 삭제 <2009.1.7>
- ⑥ 삭제 <2009.1.7>
- ⑦ 삭제 <2009.1.7>
- ⑧ 삭제 <2009.1.7>

부칙 <법률 제11327호, 2012. 2.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상임이 아닌 위원부터 적용하며, 대통령은 상임이 아닌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각 3명이 될 때까지 국회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번갈아가며 임명 또는 위촉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관련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에 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4. 제2호 또는 제3호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등의 의견
5. 그 밖에 제도의 개선이나 법률 또는 조례의 개정·폐지를 위하여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9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 및 확인) ① 법 제82조제

- 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그 퇴직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의 장(퇴직당시의 소속기관·단체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승계한 기관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거쳐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가 본인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요청서를 접수한 소속기관·단체의 장은 법 제82조에 따른 사항을 조사·확인하고 그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공공기관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 ③ 관할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이송 받은 확인요청서를 검토하여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이 법 제82조에 따라 제한되는지의 여부를 소속기관단체의 장을 거쳐 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0조(비위면직자의 취업확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일부터 5년간 공공기관, 같은 항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의 취업여부를 직접 또는 관계기관·조회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89조제2항·제3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0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패방지시책 추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제13호에 따른 부패방지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3. 법 제12조제14호에 따른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한 신고의 접수 · 처리 및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무
 6.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접수 · 처리 · 조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부파행위의 신고, 신고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62조에 따른 신분보장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법 제64조에 따른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무(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법 제68조에 따른 포상 및 보상에 관한 사무
 11. 법 제83조에 따른 취업자의 해임요구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10.17]
- 제9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법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9.5.28]
- 제92조(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31호, 2011.10.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부신고자 보호제도의 이해

발행년도 2013

발 행 처 국민권익위원회/보호보상과

주 소 서울시 서대문구 의주로 81 임광빌딩 본관

전 화 02-360-6643

전 송 02-360-3555

본 책자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 매뉴얼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유하고 있으며, 무단 전제 또는 복제를 금합니다.

